

'노키즈존'

남 x 여

아동친화 사회로

발제

'노 키즈' 대한민국에서 '예스 키즈' 대한민국으로
: 아동친화사회를 위한 국회의 역할

용혜인 /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아동친화사회 조성을 위한 노력과 과제

류현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권리정책팀장

토론

어린이의 '노키즈존' 경험과 어린이가 살고 싶은 사회
이지에·이정후 / 활동가

양육자의 '노키즈존' 경험과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
남궁수진 /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UN아동권리협약과 '노키즈존' 시정 권고의 의의
조정익 /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과장

'노키즈존'에 대한 법률적 쟁점과 입법과제
조덕상 /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변호사

목 차

【환영사】

용 혜 인_기본소득당 국회의원	_8
오 영 환_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_10
이 양 희_국제아동인권센터 이사장	_12
정 태 영_세이브더칠드런 총장	_14
권 은 숙_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_16

【발제】

‘노 키즈’ 대한민국에서 ‘예스 키즈’ 대한민국으로 : 아동친화사회를 위한 국회의 역할	_21
용 혜 인_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아동친화사회 조성을 위한 노력과 과제	_33
류 현_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권리정책팀장	

【토론】

어린이의 '노 키즈 존' 경험과 어린이가 살고 싶은 사회 _51
이 지 예 · 이 정 후_활동가

양육자의 '노 키즈 존' 경험과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 _57
남 궁 수 진_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UN아동권리협약과 '노 키즈 존' 시정 권고의 의의 _71
조 정 의_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과장

'노 키즈 존'에 대한 법률적 쟁점과 입법과제 _75
조 덕 상_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변호사

환영사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양희 국제아동인권센터 이사장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총장

권은숙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국회 최초로 ‘노키즈존’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더없이 기쁩니다.

‘노키즈존’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첨예합니다. ‘노키즈존’에 대한 의견은 다를지라도, 아동과 양육자가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마음만큼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토론회는 영업주 등 개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아동을 배제하는 사회 시스템 전반을 돌아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동이 존중받는 사회는 누군가 손해를 입거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이며, 모든 사람이 환대받는 사회입니다. 오늘의 토론회가 아동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함께해주신 어린이 토론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토론회를 준비하다보니, 국회가 얼마나 어른 중심의 공간인지를 더욱 많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 토론자의 신체조건을 고려한 의자가 없었고, 화장실 중 어린이 전용칸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린이를 단순히 ‘귀여운 존재’가 아닌, 존중해야 할 시민으로 대하려는 노력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럼에도 어렵고 불편한 공간을 마다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환영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목소리 내주시는 어린이 토론자 분들께 각별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부족하나마 이 토론회부터 어린이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기꺼이 토론회에 함께해주신 모든 패널과 공동주최 단위에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워킹대디’ 국회의원으로서 양육자와 아동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에 언제나 함께해주시는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기획 초반부터 고민을 모아주셨던 세이브더칠드런과 아동권리를 지키는 데에 단단한 거처가 되어주시는 국제아동인권센터에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당사자 활동가의 목소리를 기꺼이 모아 주셨던 정치하는엄마들, 어려운 주제에도 기꺼이 토론을 맡아주신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가 있어서 이번 토론회를 무사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고민하신 바를 풍부하게 나눠주실 김형모 좌장님을 비롯한 여러 패널 분들께도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도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 국회의원이자 한 명의 양육자로서 아동친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과제를 적극적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갑 국회의원 오영환입니다.

먼저, ‘노키즈존’ 넘어 ‘아동친화사회’로-국회토론회를 공동주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은 마음입니다. 토론회를 준비하기까지 많은 노력해주신 용혜인 의원님을 비롯해 각 단체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축하 인사를 함께 전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은 누구나 공감하고, 모두가 당연시하는 아주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일 테지만, 최근 ‘노키즈존’을 주제로 한 찬반논의의 양상을 보면, 당위와 현실의 차이를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한편, 지난해 집계된 합계출산율 0.78명의 통계치 역시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과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출생과 돌봄의 문제는 더는 개인에게만 국한할 수 없는 일이며,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일에 정부와 당국의 적극적 움직임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나, 제도적 지원만큼이나 아동친화 사회로 향하는 사회적 합의의 과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은 않습니다. 기존 ‘YES(예스)·NO(노)’의 이분법적 논의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왔습니다. 진정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는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 보다 폭넓고 건강한 사회적 대토론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국회토론회가 갖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아동 당사자와 양육자의 목소리부터, 각계 전문가들의 생각을 다양한 시각에서 심도 있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의 ‘노키즈존 찬반토론’을 넘어 ‘아동친화사회를 위한 국민적 대토론’의 문화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의 아이와 부모, 그리고 모든 세대가 **고립과 단절**을 넘어 **연대와 화합**을 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26개월 딸 아이의 아버지이자 국회의원으로서 그 아름다운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과 토론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아동인권센터 이사장 이양희입니다.

〈'노키즈존' 넘어 어린이 공존 사회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용혜인 의원과, 함께해 주신 오영환 의원,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에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더 나아가,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분들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엘리노어 루즈벨트'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보편적 인권은 결국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나요? 인권은 우리 집과 가까운, 너무 작아서 세계 지도에서조차 표시되지 않을 정도로 작지만, 한 개인에게는 그의 공간, 동네, 학교, 일터인 곳으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차별 없이 공정한 정의, 기회, 존엄을 구하는, 그러한 곳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작은 곳에서부터 인권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면, 그 어느 곳에서도 인권의 의미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엘리노어 루즈벨트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올바른 법제를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이며,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나의 가족, 이웃, 동료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나의 책무입니다.

최근에 노키즈존이 늘어나면서 아동뿐 아니라 시니어, 노트북 지참 손님, 단체 손님 등의 출입을 막는 곳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정 집단을 못 들어오게 배제하는 것이 선택지 중 하나로 고려되면서 점차 집단을 구분 짓고 소통을 단절하는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키즈존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의 권한인지 아닌지, 책임이 아동에게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아닌, 나와 다른 특성을 가진 집단을 배제하는 운영 방침이 비차별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지의 여부로 접근해야 합니다. 비차별의 원칙의 핵심은 나와 타인의 다른 점을 틀림, 불편함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잠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60년대 초반에 저는 선친을 따라 미국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어린 제가 너무도 놀라웠던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흑인과 개는 출입금지"라는 문구가 식당들에 붙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요! 이 건 먼 나라의 일이라고 하겠지요? 일제강점기에 바로 우리가 겪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차별을 넘어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다양한 이유와 형태로 차별은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언제, 어디서든 우리의 연령, 성별, 종교, 인종,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 등이 소수에 해당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상황에서 배제 당하거나 차별을 경험한다면 다수의 이익을 고려해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존중을 경험한 아동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듯이, 배제와 차별을 경험한 아동은 자신과 다른 타인을 마주했을 때 배제와 차별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아동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면, 다름을 포용하고 그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무이행자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책무입니다. 아동친화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권리 존중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어떠한 책무를 갖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키즈존 넘어 아동친화사회로'라는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갖고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신 용혜인 의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아동의 출입을 금하는 '사업장'을 넘어서 비차별의 논의로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이브더칠드런 총장 정태영입니다.

먼저 세계 인구의 날을 맞이하여 개최하는 '노키즈존을 넘어 아동친화사회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토론회를 함께 주최하는 용혜인 의원님, 오영환 의원님,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와 귀한 시간을 내어 좌장과 발제,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세이브더칠드런의 조사에 따르면, 성인 10명 가운데 3명만이 '한국이 아동·청소년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답했습니다.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지켜지고 있다는 응답은 11.7%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동을 독립적 인격체로서 존중하며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해 국가와 사회가 해야 할 역할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2013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세계 많은 곳에서 아동에 대한 관용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우려하며, 아동의 배제는 그들이 시민으로 발달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의 공간에서 갖는 아동의 경험은 자신 스스로를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인지하도록 도우며, 이는 결국 우리 시민 사회를 증진하고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현재 노키즈존은 제주에만 80여 곳, 전국에 500여 곳이 넘게 운영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동의 성장 과정에는 지역사회나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 규범과 문화를 익히고 참여함으로써 아동이 소속감을 느끼고, 이를 바탕으로 자아 정체성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 사회가 아동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우리 곁에서 성숙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사회의 발판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세이브더칠드런도 아동이 온전한 인격체로서 존중과 환대를 받는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권은숙 · 박민아 · 서성민입니다.**

우선 「‘노키즈존’ 넘어 아동친화 사회로 」 토론회를 주최해주신 용혜인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공동 주최로 함께 해주신 오영환 의원님, 국제아동인권센터, 세이브더칠드런,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에도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2022년 정치하는엄마들은 100주년 어린이 날을 맞아 어린이차별철폐의 날을 선포하며 ‘노키즈존 가고 차별금지법 오라’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차별 당사자인 어린이들이 노키즈존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어린이들이 당사자로서 말했던 노키즈존에 대한 발언이 「‘노키즈존’ 넘어 아동친화 사회로 」 토론회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이라 생각하여 어린이의 발언의 일부를 발췌하여 축사에서 나누려 합니다.

“노키즈존은 어린이들에게 차별입니다. 조용히 해야 하면 조용히 하자는 규칙을 써주세요. 안전해야 한다면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어린이들도 규칙을 배우고 지킬 수 있어요. 사실 어른들도 규칙을 지키는 법,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중이잖아요. … 어른들에게 외칩니다. 차별 대신 함께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100주년 어린이날 어린이차별철폐의 날 기자회견 김나단 어린이의 발언 중 일부-

“제가 어른이 아니라고, 어린이라고 못 들어가게 하면 울고 싶어요. 어른들도 아이였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땐 노키즈존이 없었죠. 어린이들이 노키즈존을 배워서 나중에 어른들을 못 들어오게 할 지도 몰라요. 어른들이 나쁜 걸 알려주지 마세요.”

-100주년 어린이날 어린이차별철폐의 날 기자회견 김한나 어린이의 발언 중 일부-



정치하는엄마들
www.politicalmamas.kr

“어린이들도 예쁜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요. 어린이들도 예쁜 카페에서 음료수를 먹고 싶어요. 노키즈존을 없애주세요. 어른들은 못 가는 데가 없는데 어린이들은 왜 못 가는 데가 있나요.”

-100주년 어린이날 어린이차별철폐의 날 기자회견 이지에 어린이 발언 중 일부-

‘노키즈존’은 어린이들에게 사회구성원으로써 환대의 경험이 아닌 차별의 경험을 심어주고 어린이 라는 이유로 존재 자체를 거부 당하는 경험을 사회로부터 당하게 됩니다.

또한 ‘노키즈존’은 어린이 뿐만 아니라 그 어린이들을 돌보고 키우는 사람인 양육자들에 대한 거부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맘충’과 같은 단어로 양육자들을 혐오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 ‘노키즈존’은 어린이를 포함하여 근본적으로는 어린이를 동반한 양육자들을 거부하는 행태입니다.

결국 이러한 ‘노키즈존’의 확산은 어린이와 양육자의 거부와 차별에 그치지 않고, 수용의 문화 대신 거부의 문화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에 일조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옹혜인 의원님과 류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권리정책팀장님의 발제를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과장 조정의님,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조덕상 변호사님의 토론에 이어 직접 당사자인 아동과 양육자가 경험한 ‘노키즈존’에 대한 토론은 ‘노키즈존’이 당사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기는지 되새길 수 있는 토론이라 생각합니다. 진정한 아동 친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발 제

**‘노 키즈’ 대한민국에서 ‘예스 키즈’ 대한민국으로
: 아동친화사회를 위한 국회의 역할**
용 혜 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아동친화사회 조성을 위한 노력과 과제
류 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권리정책팀장

발제 1.

**‘노 키즈’ 대한민국에서 ‘예스 키즈’ 대한민국으로
: 아동친화사회를 위한 국회의 역할**

용 해 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아동친화사회를 위한 국회의 역할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1. 들어가며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만 두 살을 앞둔 아이와 함께 기자회견을 했다. 그동안 수도 없이 서봤던 기자회견장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이 됐다. 여섯 페이지의 기자회견문을 읽는 동안 아이는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수어통역사님을 비롯한 기자회견을 취재하러 와주신 관계자 분들은 기꺼이 우리의 시간을 존중하고 기다려주셨다. 나와 아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묵묵히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큰 힘이 되었다.

손에 땀을 쥐고 긴장한 채로 시작한 기자회견은 많은 분들의 애정과 존중 어린 눈빛 속에서 무사히 마무리되었다. 기자회견장을 나서며, 언젠가 아이와 함께하는 기자회견이 ‘낯설지 않은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아이와 함께하는 일은 언제나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 굳이 기자회견장이 아니라도 그랬다. 출산 이후, 우울한 마음을 떨쳐내기 위해 아이와 나선 첫 외출에서 갔던 카페는 ‘노키즈존’이었다.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노키즈존’이라고 써붙여놓은 카페의 경계도 넘지 못했다. 아이와 함께라는 이유로 출입을 제지당할 때마다 사회가 더 이상 나 같은 사람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았다. ‘노키즈존’이라고 명시한 식당과 카페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유아차를 끌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힘들고, 식당이나 카페를 가도 영유아를 위한 ‘아기 의자’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 수유실은커녕, 화장실에 기저귀 갈이대가 있는 곳도 드물다. 사회가 일종의 거대한 ‘노키즈존’ 같았다.

2년 전, 처음으로 아이와 함께 국회에 등원했다. ‘임출육¹⁾’을 선택한 여성이 자신의 일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고 싶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에게 ‘슈퍼맘’이 될 것을 강요하는 사회를 바꾸고 싶었다. 그 고민 끝에 첫 출발점으로 발의한 것이 ‘국회 회의장 내 아동반법’이다. 아이를 키우는 여성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하고, 정치의 공간이야말로 ‘에스키즈존’이 되어야하며, 국회부터 바꿔보자고 말이다. 그래서 국민들께, 선배동료 의원들께 국회부터 ‘에스키즈존’으로 바꾸고, 아동에 대한 사회적 돌봄을 확대해야 한다고 호소 드렸다.

1) 임신, 출산, 육아를 줄여서 이르는 말.

법안을 발의한 이후, 많은 응원과 비판을 받았다. 사람들은 양육자가 처한 현실을 굳이 보고 싶어 하지 않았다. 아이의 ‘귀여운’ 모습에 환호하면서도,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일상은 낯설어 했다.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지 않는 뒤편의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있었다. 나는 양육자가 겪는 삶의 문제를 당사자이자 정치인으로서 풀어내고자 했다. 국회 토론회 《일도 돌봄도 함께》 주최, ‘슈돌법’ 공동발의 등 양육자 관점에서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시도했다.

‘노키즈존’에 대한 논의는 그중에서도 가장 조심스러웠다. 노키즈존에 대한 지지여론은 여전히 높고, 시민들에게는 아동과 공존하는 삶을 고민할만한 여유가 없다. 그럼에도 정치는 논의의 장을 열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나는 동료 시민으로서 양육자인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논의의 장을 열고자 했다.

기자회견 이후, 국회 안팎에서 ‘노키즈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것을 보며 더 많은 논의와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고 느꼈다. 이 토론회가 ‘노키즈존’을 둘러싼 참여한 법적·사회적 쟁점을 훑아보고, 아동친화사회 조성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나 역시 한 사람의 양육자이자 국회의원으로 ‘노키즈존’ 금지에 대한 우려에 답하고, 아동친화사회 조성을 위한 국회의 책무를 제시할 것이다.

2. ‘노 키즈’ 대한민국을 넘어서기 위한 질문들

기자회견 이후, SNS에 가장 많이 달린 댓글이 있다. “노키즈존은 아이가 아닌 일부 민폐 부모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의 부주의 및 부적절한 행동으로 노키즈존이 생겨났다”는 설명만으로는 ‘노키즈’존이 급증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한국에서는 ‘노 시니어 존’, ‘노 중학생 존’, ‘노 정신질환자 존’ 등 노키즈존 이후 새로운 ‘노OO존’이 등장하고 있다. ‘노OO존’은 부적절한 행동에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공간의 미감과 분위기에 저해된다고 판단하는 대상을 전면적으로 걸러내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노키즈존’의 출발점은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규제였을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아동의 사회적 참여를 가로막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이용자의 부적절한 행동을 제재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집단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분명히 차별이다. ‘노키즈존’은 개별 영업주의 의지로 불현듯 출현한 게 아니라, 아동을 배제하는 사회시스템이 잉태한 결과물이다. 국가는 ‘노키즈존’에 담긴 차별적 맥락을 이해하고, 아동친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아동친화적 관점으로 사회를 재구성했을 때, 개별 영업장의 문제도 자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를테면 정부와 지자체가 시민사회와의 합의를 통해 아동의 이해를 고려한 공공 공간

운용 및 참여에 관한 사회적 규범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아동이 다양한 시공간에서 직접적인 경험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도우면 어떨까? 부모가 통제하지 않더라도 아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존중의 문화를 배울 것이다.

‘노키즈존’을 꼭 법으로 금지해야 할까? 개별 영업장이 아동 돌봄에 자원을 투자하기 어려운 현실, 영업장의 수익을 고려해 아동 출입을 꺼리게 된다는 여론 또한 상당하다. 현실적으로 ‘노키즈존’을 당장 법으로 금지한다고 해도,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다만 ‘노키즈존’이 아동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기에, 국가는 노키즈존의 실태를 점검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유인책을 고안할 책무가 있다.

한편, 키즈카페 등 어린이 전용 공간을 확대하는 것은 ‘노키즈존’의 해법일까? 나는 어린이 전용 공간을 확대하는 것이 노키즈존의 대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는 아동을 시민으로 존중하기보다는 통제 가능한 공간에 격리되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한다. 키즈카페 등 아동 이용자가 주 대상인 공간은 사회와 격리된 공간으로 여겨진다. 그러다 보니 아동은 다양한 시공간에서 사회적 경험을 통해 배움을 얻기 어렵다.

아동을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과 함께 사는 것이 일상이 되는 사회가 필요하다. 미국과 인도의 영화관에서는 ‘모두가 같이 웃고 떠드는 문화’가 당연하다. 애니메이션 상영관에서조차 ‘아이의 시끄러움’을 문제 삼는 우리나라와는 대조되는 풍경이다. 아동이 시끄럽거나 자주 우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아동이 울거나 소란스럽다고 해서 그것이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아동의 특성을 고려해, 아동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노력해야 한다.

‘노키즈존’은 아동 이용자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향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 속을 들춰보면 격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 국가는 개별 영업장이나 아동, 양육자의 잘잘못만을 캐묻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동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들기 위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

3. ‘노 키즈’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한 정치의 역할

초저출생과 인구위기의 시대, 노키즈존에 대한 문제의식은 나날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여러 지역에서 노키즈존에 대응하는 제도적 개선안이 추진되었다. 서울은 어린이 패스트트랙을 비롯한 ‘어린이 First 문화 조성’을 약속했고, 올해 내 500개 소 확대를 목표로 ‘서울 키즈오케이존’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를 발의했다. 지금이야 말로 중앙정부와 국회가 논의의 중심점을 형성하고 입법적·행정적 노력을 다할 수 있는 적기다.

이 장에서는 ‘노 키즈’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한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노력을 돌아보고, 아동친화사회를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서울특별시 :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 서울키즈오케이존 운영

서울시는 지난 5월,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참여·존중, ▲신나는 놀거리, ▲꿈·미래, ▲안전·돌봄, ▲심리·건강 등 5대 분야 20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참여·존중 분야에서는 ‘어린이 권리장전’을 발표해 어린이 존중 문화를 확산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어린이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서울시의 지향이 단순히 ‘선언’에 그치지 않고 행정 곳곳에 스며들 수 있기를 바란다. 특히 어린이 패스트트랙 도입을 비롯한 ‘어린이 First 문화 조성’은 일부 지자체가 아닌 정부 전반으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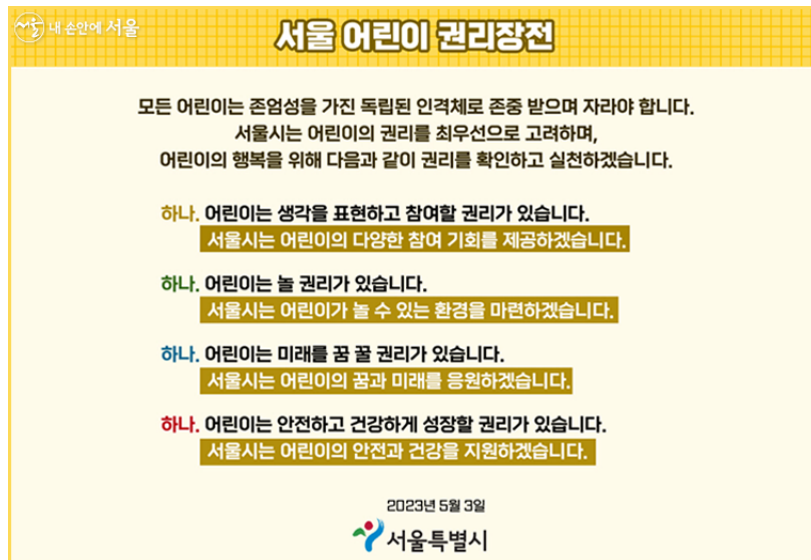


그림 17 지난 5월 발표된 서울 어린이 권리장전 이미지

다만 서울시가 제공하는 놀이 프로그램이 어른의 지시와 감시를 전제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제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UN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17조에 따르면, 아동은 성인이 결정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시간뿐만 아니라 어떤 요구도 받지 않은 시간- 기본적으로 원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을 가질 자격이 있다. 놀이 프로그램이 아동에게 특정 목적을 강요하거나 통제하는 데에 목표를 두지 않도록, 아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놀이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순천의 ‘기적의 놀이터’가 있다. 어른보다 ‘아이’에 초점을 맞춘 기적의 놀이터에는 놀이터 활동가와 지킴이가 있다. 이들은 아동의 놀이에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이 아

나라, 아동이 적절한 위험 속에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멀리서 지켜보는 역할을 한다. 어른들이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땅과 모래를 없애고 인공 바닥재를 깔았던 기존의 놀이터와 달리, 기적의 놀이터는 자연을 최대한 즐기고 몸을 이용한 놀이를 하도록 만들어졌다.²⁾

또한 아동의 놀 권리에 있어 ‘찾아가는’ 형식이나 ‘프로그램’ 방식을 넘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놀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놀이는 아동의 일상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단발성의 행사나 프로그램으로는 아동의 놀 권리를 충족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도 지속 가능한 놀이기반으로서 ‘서울형 키즈카페’를 400개 소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동의 놀이공간을 ‘키즈카페’로만 한정 짓는다면 지역사회에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은 협소해질 수 있다. 2017년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의 주 놀이 공간은 이미 77.5%가 실내공간이었다. 코로나 이후, 실외 놀이공간은 더욱 위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아동이 놀이터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사회의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놀이를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 키즈오케이존’을 시행한다. ‘서울키즈 오케이존’은 서울시가 지정한 어린이와 양육자를 환영하는 매장이며, 아동용 의자나 수저·포크 등으로 어린이의 식사 편의를 제공한다. 이는 지자체 차원에서 아동·양육자 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노키즈존’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없는 ‘키즈오케이존’ 정책은 한계가 있다. 이 정책은 아동과 양육자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키즈오케이존’에만 한정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격리와 차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사회의 모든 공간이 ‘키즈오케이존’이 되지 않는 이상, 격리와 차별의 문제는 해소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보다 신중하고 세심한 아동접근성 고려가 필요하다. 서울시가 ‘서울 키즈오케이존’으로 지정한 일부 매장은 키오스크의 높이 상 아동이 혼자서 주문을 하기 어렵다. 화장실 등 매장 안팎의 편의시설이 아동이 사용하기에 원활한지도 검토가 필요하다. ‘서울 키즈오케이존’은 양육자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에 유의미하지만, 아동이 어른과 함께하지 않아도 환대받을 수 있는 공간인지는 알 수 없다. 행정적 차원에서 아동접근성에 대한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2) 제주도의회 :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금지 조례 발의

제주의 노키즈존은 78곳으로 전국 ‘노키즈존’의 14.4%를 차지한다. 이는 관광산업이 발달한 제주도의 특성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관광도시라는 특성이 ‘노키즈존’의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과도한 상업화가 아동에 대한 배제로 이어진 현실을 보여준다. 실제로 제주도

2) 김형훈(2017). “놀이터에 활동가도 두고, 지킴이도 있다네요”. 미디어제주. 2017-09-19 기사.

의회에 방문했을 때, 도의원들은 ‘아이 손님이 어른에 비해 돈이 안 되어 안 받는 상인이 많다’는 여론이 있다고 밝혔다.

제주에서는 ‘노키즈존’ 비율이 높은 만큼 저항도 상당했다. 대표적으로 2016년, 제주시 소재 식당에서 나이 제한으로 인해 출입을 거부당한 시민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은 일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진정에 대해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사업주에게 향후 식당의 이용대상에 대해 13세 이하 아동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2019년에는 제주의 어린이 동화작가인 전이수 님이 쓴 일기가 공유되며, 노키즈존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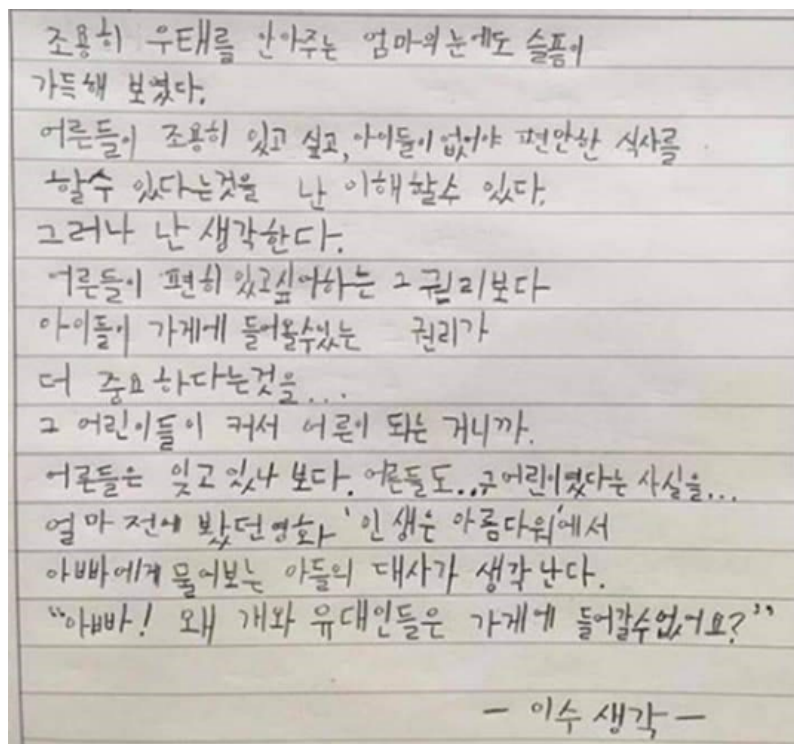


그림 18 전이수 동화작가의 일기 일부 ©전이수 작가 인스타그램

지난 5월, 제주에서는 ‘노키즈존’ 지정금지 조례안이 발의되었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도민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키즈존’을 금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책무”를 부여한다. 또한 구체적 방안으로 ▲노키즈존 지정금지 권고 및 계도, ▲아동의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보호자 교육, ▲차별 금지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등의 지원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이 조례는 개별 영업장의 ‘노키즈존’ 지정 자체보다는 행정적 노력과 정치적 설득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춘다. ‘노키즈존’이 아동차별에 무감했던 정치와 행정의 문제라는 점에서 출발해, 시민들에 대한 숙의와 설득을 통해 ‘노키즈존’을 줄여나가겠다는 의도다. 제도적 실효성 면에서는 한계가 있으나, ‘노키즈존’이 아동차별임을 인식하고 개선 필요성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유의미하다.

현재 ‘노키즈존’ 지정금지 조례는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되었다. 법률 유보의 원칙에 따라, 상위 입법이 없는 상황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노키즈존’이 공론화된 지 10년이 되어가지만, 지금까지 국회 차원의 토론회는 없었다. 아동차별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발굴하지 못한 국회의 책임이 크다. 제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노키즈존’을 비롯한 아동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입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에서 입법하지 못하더라도 ‘노키즈존’ 지정금지는 아동의 헌법 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지자체 별 조례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

4. 아동친화사회를 위한 국회의 과제

2020년, 차별 없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평등법’을 발의했다. 평등법은 ‘노키즈존’을 비롯한 나이에 따른 차별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의미한 입법이라고 믿는다. 패스트트랙 등 야당 간의 공조를 통해 반드시 제21대 국회 내에서 통과시킬 것이다.

나아가, ‘노키즈존’에 대응하는 직접적인 입법과제 역시 발굴해나갈 필요가 있다. 본 토론회를 통해 국회의원으로 노키즈존 확산 방지를 위한 입법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며, 토론자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노키즈존’의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차별적 요소를 점검해야 한다. 공적 차원에서 ‘노키즈존’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노키즈존’ 지도 등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노키즈존’에 대한 통계는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노키즈존’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려는 노력은 전무하다. 그렇기에 ‘노키즈존’으로 운영하지만 이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영업장도 생기고, 이용자가 영업장에 방문하고 나서야 ‘노키즈존’임을 알게 되는 경우도 많다.

보다 명확한 방식으로는 ‘노키즈존’에 대한 영업허가제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도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유해업소인 단란주점 등은 국가로부터 영업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청소년유해업소는 ‘청소년이 문제적 행위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적이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노키즈존’이 필요하다면, 이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노키즈존’에 대한 영업허가제는 아동 보호를 원칙으로, ‘노키즈존’으로 지정된 공간이 충분히 아동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지 판별하는 기준을 세운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복지법에 ‘노키즈존’의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할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기해야 한다. 또한 ‘노키즈존’ 영업허가제를 명문화해, 국가가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고려해 ‘아동출입제한구역’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아동기본법 등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 제정 노력도 절실하다.

둘째, 일본과 서울시에서 도입을 결정한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해야 한다.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는 어린이 및 어린이 동반고객이 줄 서지 않고 먼저 입장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어린이에게 ‘키즈카페’만이 아닌 다양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양육자를 환대하고 포용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공시설 중에도 아동의 출입을 꺼리거나 금지하는 기관이 많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만 16세 이상만을 이용자로 삼고, 초등학생 이하 연령은 아예 출입할 수도 없다. 국회 도서관 역시 대학생 혹은 만 18세 이상인 자만 출입이 가능하다. 시립·구립 도서관을 비롯한 여러 공공시설에서도 암묵적으로, 혹은 자의적으로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관행이 있다. 적어도 공공시설에서라도 아동이 환대받을 수 있도록 공공시설 어린이 패스트트랙을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아동의 놀이공간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도시는 어린이에게 ‘놀이 좋은 곳’이 아니다. 7만 개가 넘는 놀이터가 있지만, 그 중 공공 놀이터는 1만 여 개에 불과하다. 현행 법률은 15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만 놀이터를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공원녹지법은 도시 내 녹지를 보전하고 유지할 국가와 지자체장의 권한을 규정했으나, 어린이 공원에 대한 기준과 책무는 부여하지 않았다.

놀이공간은 아파트에 사는 아동에게만 필요하지 않다. 모든 아동은 ‘거주지 도보 10분 이내에 자연이 풍부한 공간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이 놀 권리³⁾’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인구 수 혹은 토지 면적 당 아동의 놀이공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나아가, 다양한 연령과 신체조건을 가진 아동이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놀이기구의 ‘안전’에만 초점을 맞추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특히 장애 여부에 구애받지 않는 놀이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통합놀이터법으로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양육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양육자 교육이 가능한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노키즈존을 ‘무책임한 일부 부모들’의 문제로 치환한다. 공공장소에서 아동의 소위 ‘문제행위’를 부모 개인의 노력으로 제재해야 한다(혹은 ‘할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한다. 이는 아동을 보호자의 통제 영역에 두고, 아동에 대한 공적·사회적 돌봄을 어떻게 이행할지 고민하지 않는 편협한 사고다.

다만 돌봄에 대한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등 양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빠르게 포착하기 위해 양육자 교육은 필요하다. 양육자 교육을 통해 아동의 공공장소 이용에 있어 보호자가 고려해야 할 바와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을 공유한다면, ‘아이로 인해 경영 피해를 본다’는 주장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도시 속 아동에 대한 잘츠부르크 성명서(2017) 일부 인용

양육자 교육은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교육이 되어야 하며, 양육자가 마주하는 일상적 고민과 사회적 차별을 인식하고 해소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양육자 교육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돌봄이 개인의 몫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서 이뤄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질문해야 한다. 현재 양육자 교육은 개별 어린이집에서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이마저도 생계를 유지하느라 받지 못하는 양육자가 대부분이다. 국가는 양육자 교육을 위한 유급휴가 지급 등을 제도화해, 양육자가 실제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5. 나가며

기자회견 이후, CNN을 비롯한 여러 외신에서 한국의 ‘노키즈존’에 대한 보도가 이어졌다. CNN의 기사에서 대학 강사인 보니 킬랜드는 “20~30대 한국인들은 개인 공간에 대한 개념이 강해서 시끄러운 아동에 대한 관대함이 줄어든다”고 분석했다.⁴⁾ ‘청년세대’의 ‘개인화’가 노키즈존을 촉발한 원인이라고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쩌면 ‘노키즈존’은 자신만의 공간을 누리기 어려운 우리 모두의 경험에서 출발했을 수 있다.

많은 국민들이 방음도 안 되는 좁은 방에서 생활하거나 사람으로 뭉뚱한 지하철에서 이어폰을 끼며 자신만의 공간을 갈구한다. 일상 속에서 여유와 휴식을 박탈당한 사람들이 타인을 환대할 수 없는 것을 개인의 탓으로만 돌리긴 어렵다.

이번 토론회는 ‘노키즈존’을 주제로 하는 최초의 국회 토론회다.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아동이 환대받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매우 ‘논쟁적’인 이 주제를 다루는 이 토론회에 함께하는 것이 토론회 주제를 제안받은 모두에게 쉽지 않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아동이 환대받는 사회는 누군가가 손해를 입거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사회가 아니다. 서로를 환대할 수 있는 삶의 여유와 시민적 합의가 자리하는 사회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이며, 모든 사람이 환대받는 사회다. 국회에서 처음 열리는 오늘 ‘노키즈존’ 토론회는 바로 그 시민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아동이거나 아동이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어느 순간에 느리고 서투르며, 언제나 처음 배우는 일에 미숙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빠르고, 능숙하고, 성숙하기만 한 사람은 없다. 빠르고 편리한 일상을 위해 누군가를 차별하고 배제해도 괜찮다는 생각은 모든 사람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사회는 빠르고 능숙하고 성숙한 사람들만을 위한 사회가 아니라, 느리고 서툰 사람들도 괜찮은 사회다. 어린이를 차별하는 사회가 아니라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사회다.⁵⁾

4) Chris Lau 외 3인(2023). In country with world's lowest fertility rate, doubts creep in about wisdom of 'no-kids zones'. CNN. 2023-06-24 기사.

오늘 이 토론회에 기꺼이 함께해주신 아동과 양육자, 조력자, 전문가 모두에게 존경의 인사를 보낸다. 차별과 배제 맞서는 용기 있는 목소리는 아동과 양육자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를 환대하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나 역시 대한민국 국회의 일원으로서, 제21대 국회에서 아동친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힘쓸 것을 약속드린다.

5) 2023.05.04. 기자회견 《‘노 키즈’ 대한민국이 아닌 ‘퍼스트 키즈’ 대한민국으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발언문

발제 2.

아동친화사회 조성을 위한 노력과 과제

류 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권리정책팀장

모든 어린이가 살기 좋은 사회 '아동친화사회 조성'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

들어가며

올해는 어린이날 101주년을 맞이한 해임. 어린이날이 제정된지 100년이 넘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과연 아동이 살기 좋은 사회일까.

올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임.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1명대 아래인 나라. 특히 서울은 0.59명으로 전국에서도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도시.

출산율 '세계 꼴찌' 한국의 저출산의 큰 원인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 아이를 낳고 키우기 어려운 사회라는 인식에서 오는 '두려움'이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음. 돌봄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 아이들을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기 좋은 사회를 위해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 다시 질문해야 함.

1. 숫자로 살펴보는 대한민국의 아동친화도

대한민국의 아동친화도는 몇 점일까.

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함. 2006년부터 지난 16년간 저출생 해결을 위해 지난 16년간 280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은 낮으며 2016년부터 합계출산율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 (국회 예산정책처, 2021)

- 수치로 보여지는 대한민국 아동들의 삶의 모습은 대한민국 아동들의 어려움 반증함. 10대의 43.7%로 청소년 사망 원인 1위 자살, (OECD stat, Health status data 2022.09)

청소년 우울증 48000명 넘어, 3년새 63% 증가, 5~14세 우울증 환자도 9천여명 넘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

청소년 4명 중 1명이 우울감을 경험, 10명 중 1명 자살 생각(질병관리청의 청소년건강

행태조사,2020년)

아동청소년 주관적 행복도 OECD 22개국 중 22위(한국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2021)
아동가족 관련 공공지출 비중 OECD 37개국 중 31위, OECD 평균 2.1%보다 낮은
1.2%에 불과 (OECD Stat,social expenditure,2019)

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7.5% 상승, 아동·청소년복지분야 예산은 1.5% 감소(참여
연대 보건복지분야 예산분석결과, 2023)

전국 노키즈존 개수 500여개 (2023)

- 양육자가 아이를 낳고 키우기 두려운 사회라는 인식을 반증하는 수치도 쉽게 보임
저출생의 원인 1위(58%)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EBS 다큐 설문결과,2023)
자녀양육비 1인당 3억 6500만원, 1인당 GDP대비 7.79배로 1위 (중국 위와인구연구
소,2022)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자 비율(남성/여성) 전 세계 하위 2번째(OECD,2021)

'육아휴직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했다' 응답한 비율 49% (고용노동부,일가정양립실태조사
결과, 2021)

우리나라 남성 육아휴직 기간은 1년(52주)로 OECD 세계 2위(OECD 보고서,2021)이
나, 실제 남성육아휴직 사용률 약 20%, 사용일수는 OECD 국가 중 최저(국회입법조사
처,2021)

전체응답자 10명중 1명, 초등이하 자녀 있는 응답자 4명중 1명 노키즈존으로 음식점
못간 경험있음(한국리서치센터, 2021)

대도시, 200만원 이하 저소득가구, 맞벌이가구 아동의 돌봄 공백 경험 비율 높음(보건사
회연구원,2019)

노키즈존 찬성여론 73% (한국리서치 2021, 2023)

전 세계 난민협약국의 난민인정률 평균은 38%, 우리나라 난민인정률 4%

- 아이와 양육자에 대한 타인의 각박한 시선과 혐오/차별적 발언이 아동친화적인 문화조성
저해함. "자칫하면 맘충 소리를 들을까 걱정하게 되고, 아이가 떼를 쓴다는 이유만으로
눈치를 보는 상황이 많아진다 (중략) 지하철역 엘리베이터에 유모차를 끌고 탔다가 "비
좁은데 왜 들어오냐, 맘충이냐"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지난 7월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

나티에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다 아이를치고 간 여성에게 항의하자 맘충이라고 하더라"
(중앙선데이,23.3.18일자)

저출생 극복을 위해 궁극적으로 나가야 할 방향은 아동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
임. 중앙정부의 직접적 역할도 중요하지만, 보다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함께 자발적인 실
천을 촉구할 필요가 있음.

사회 곳곳에서 아동의 눈높이를 고려하고 아동의견을 반영한 아동에게친화적인 환경과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또 아동을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아동을 포함한 모든 사람
이 존중받는 비차별적이고 포용적인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아동친화사회 조성을 위한 노력과 시사점

1)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과 청소년을 고려한 포괄적인 정책 및 전략 수립의 필요성, 자원
의 할당을 강조했음. 또한 아동권리를 이행해야 하는 기업, 사법당국, 정부의 아동권리 존중
책임을 권고함.

포괄적인 정책 및 전략

8. 아동과 청소년 정책을 위한 기본계획과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기본계획의 채택에
주목하며, 위원회는 이러한 아동 관련 정책 및 전략이 협약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고, 계획의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 원 할당을 보장하도록 당사국에
권고한다.

자원의 할당

10. 교육, 영유아기, 그리고 아동복지 사업 영역의 예산 증가와 아동 · 청소년 참여예산제 도입을
환영하나, 위원회는 당사국의 아동 관련 예산이 국내총생산(GDP)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공공예산 수립 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9호(2016)를 참고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의 사 항을 촉구한다.

- (a) 아동을 위한 모든 정책, 계획, 프로그램 및 입법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단계에 걸쳐 적절한 재정적, 인적, 기술적 자원을 할당하고, 그렇게 할당된 자 원의 활용을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실행할 것
- (b) 아동을 위한 예산 및 전반적인 사회복지지출을 국내총생산(GDP)에 비례하여 증가 시키고,
지방자치단체 간 격차를 감소시킬 것
- (c)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을 위한 예산할당을 도입할 것

아동권리와 기업부문

15. 위원회는 대한민국 기업들의 국내외 경영활동으로 인해 아동권리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아동권리에 대한 기업 영역의 영향 관련 국가의 무에 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6호(2013),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및 이전의 권고(CRC/C/KOR/CO/3-4, para. 27)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국내외에서 활동 하는 기업들을 위한 아동보호 프레임워크(child protection framework)를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한 프레임워크는 아동권리 침해를 보고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 영향평가,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를 포함하여야 하며, 모든 이해당사자가 아동권리 실현과 보호에 책임이 있음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

18. 위원회는 아동영향평가제도 수립을 환영한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4호(2013)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모든 관련된 재판절차, 의사결정, 정책 및 프로그램에 우선적 고려사항으로 반영하며 일관성 있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이전의 권고들을 당사국에 상기시킨다. 또한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a) 폭넓은 아동참여와 함께 아동영향평가 제도의 적용을 확장할 것(b) 모든 분야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결정하고 우선적 고려사항으로 적절한 비중을 부여하는 절차 및 기준을 개발할 것

2) 아동권리주류화 적용을 통한 아동친화사회 조성 노력

아동이 살기 좋은 사회는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임. 아동친화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입법, 정책, 예산 결정 및 사법, 그리고 의사결정과 관련된 모든 일에서 아동권리접근법을 체계적으로 적용하고, 아동과 관련된 모든 일이나 결정에서 아동 최우선의 이익을 고려하며, 아동권리협약에 명시한 아동권리를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아동권리주류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아동권리 주류화를 위한 4가지 주요내용]

- 아동을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로 대우하고 존중하는 것
 - 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옹호하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것
 -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호, 증진,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를 포함한 의무이행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
 - 아동을 시민사회의 핵심주체로 인식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
- 아동권리주류화 적용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아동이 매일 생활하는 공간(도시, 학교), 또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사회(병원, 기업, 사법 등)를 아동친화적인 사회로 조성해야함.

3) 아동이 매일 생활하는 환경을 '아동친화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 아동친화사회 조성을 위해 지방정부 거버넌스 변화 및 아동중심의 우선순위 정책 추진, 이를 통해 아동권리 인식 증진 및 아동권리 증진 효과 나타남.

● CFC 의미 및 국내 현황 : 모든 아동이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받고 아동권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지역사회와 지자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로, 아동친화도시 국제 최소인증기준은 ① 아동권리 개선에 대한 입증가능한 성과 ② 아동친화도시 조성 모든 단계에서 제도화된 아동참여 ③ 지방정부의 아동정책과 사업 등에서의 비차별에 대한 입증가능한 성과 이렇게 3가지임. 한국에서는 2013년에 시작되어, 전국 지자체 243개 중 1/3이 넘는 86개의 지자체가 현재 CFC로 인증 받음.

● 아동친화도시 조성 방안 : 10가지 기본 구성요소(Building blocks)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거버넌스가 아동친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변화시킴. 먼저, 아동친화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아동친화적인 법 체계 조성,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및 정책수립을 위한 아동권리전담조직 구성,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예산분석 및 예산 수립, 아동참여체계를 갖추게 됨. 더불어, 아동권리독립기구 운영을 통한 아동권리침해 및 정책 모니터링, 아동권리영향평가 실시, 아동권리교육을 통한 아동권리인식증진, 아동친화도시조사 시행과 아동친화적인 도시 조성 4개년 추진계획과 시행계획을 통한 아동친화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 감.

● 10년간의 CFC 추진을 통한 지방정부의 변화

① 아동의 관점을 반영하고 아동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한 아동권리전담조직을 구성. 아동정책전담조직(부서)있는 CFC 인증/추진지자체 105/243개(43%) 아동권리전담인력(전담공무원)을 배치한 지자체도 118개임.

→ 아동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던 지방정부 행정체계내에 아동의견을 듣기 위한 전담부서가 신설되고, 아동인력이 CFC조성을 위한 아동관련 정책 총괄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전담제공무원으로 바뀐 지자체도 있다는 사실은 유의미함. 또한 CFC를 통한 지자체 거버넌스 변화를 통해 중앙정부가 아동복지과 내 각 팀 명칭을 아동친화정책팀, 아동보호팀, 드림스타트팀으로 구성한 것 또한 지방정부가 중앙을 변화시킨 좋은 예로 볼 수 있음

② 아동참여체계 구성을 통한 아동의 정책참여 제도화 및 아동의견 반영한 정책변화 아동참여기구 있는 지자체 103/243개, 이 중 100개(97.1%)가 CFC인증/추진 도시임. 또한 CFC 지자체는 아동참여체계 구성 시 소수아동의 참여기회 보장 및 소수아동을 위한 별도 기구운영도 확대되고 있음.

③ 아동친화사회 조성을 위한 지방정부 단위의 법적근거 마련
- CFC조성 조례 제정 한 지자체 154/243개임, 그 외에도 CFC 지자체에서 아동권리

영향평가 통한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조성 노력이 선도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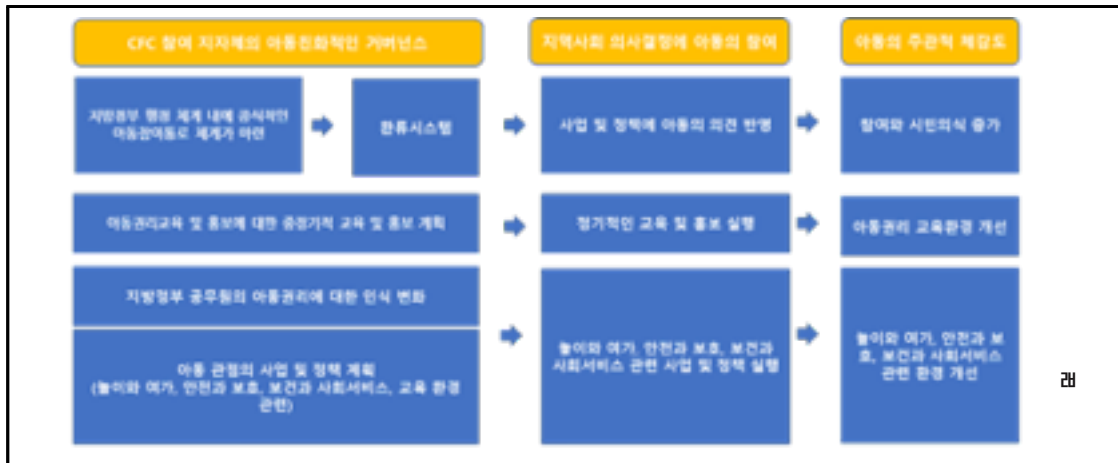
④ 아동권리독립기구 역할 통한 아동의견반영 및 아동권리침해 예방

- CFC 추진 및 인증지자체 아동권리독립기구 운영 중임. 지방정부 내 아동옴부즈퍼슨이 아동권리침해사례 조기 발굴 및 구제, 아동정책모니터링 수행, 아동의견수렴을 통해 목소리를 직접 내기 어려운 아동들의 의견을 행정으로 전달하고 정책변화를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음.

● 'CFC 지자체 내 아동이 느끼는 변화'

- ① 아동의 인권존중정도(나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지, 우리 지역사회서 아동인권을 존중받는다고 느끼는지) 약 2.45배 높아짐
- ② CFC 추진으로 인한 아동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고위공무원, 의회, 아동, 학교교사, 보호자,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등) 대상의 아동권리교육 추진 의무화 등을 통해 아동의 CRC 인지도 약 3.35배 높아짐
- ③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의무화되는 부분이 아닌 지자체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핵심사업으로 아동의 문화예술시설 확충 및 서비스 이용접근성 강화를 위한 비용, 운영시간 조정 등 다양한 노력 통해 아동의 문화예술공간 이용빈도 높아짐.
- ④ 아동친화도 조사를 실시하는 아동인권 주요 영역 6가지(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주거환경) 모두 시계열적으로 긍정응답률 수치 증, 특히 참여와 시민의식, 교육환경 영역에서는 증가폭이 훨씬 커지며, CFC 참여도시 내 아동이 느끼는 아동친화도 긍정적으로 향상

- 아동권리접근법을 통한 아동친화적인 거버넌스구축을 통해 아동을 지역사회 주요의사결정자로 참여시키고, 이를 통해 아동당사자 및 이해관계자 변화, 아동권리가 증진되는 아동친화적인 환경 개선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함.
-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은, 아동의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공간제공, 정책시행을 위해 아동친화적인 도시설계가 필요함. 이에 다양한 가족공동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정책 수립이 필수적임.
-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면서 전주 맘껏숲&하우스, 프랑스 무료모자보건센터PMI를 벤치마킹한 성북구 아동보건지소 설립, 완주군 아동참여공간, 군산 아동친화놀이터, 안전한 통학로 개선 등 아동친화공간 조성 사업 많이 추진됨. 이는 인구 유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과 언론보도도 이어지고 있음.



- 유니세프아동친화학교 : 유니세프아동친화학교는 학교운영 전반의 정책과 문화, 커리큘럼 전반에 아동권리접근법 적용하여 아동과 보호자, 학교구성원 모두 존중받는다는 느낌 향상하고, 아동시민의식, 참여권,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는 효과 나타남.
- ICFS 의미 및 국내 현황: 유니세프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권리접근법(Right based approach)을 학교운영, 학교문화, 커리큘럼 등에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총체적 학교접근법(Whole School Approach)를 기반으로 유니세프아동친화학교 모델 운영함. 학교는 아동들이 상당수의 시간을 보내는 장소로 아동의 사회화 과정및 아동이 시민으로 성장하고 사회의 주요이해관계자로 참여하는데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공간임. 이에 학생, 교직원 등 학교 모든 구성원이 아동권리를 이해하고 상호존중하는 방법과 태도를 익힘으로써, 아동권리가 존중될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실현하고, 아동이 학교에서 아동권리보장 교육과 아동친화적인 문화를 경험하고,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전문화된 아동권리교육 및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국내에서도 2019년 충북교육청과 시범사업을 통해 시작되었음.
- 유니세프아동친화학교를 통한 아동과 학교구성원들의 변화
 - ① 학생은 88.7%, 학부모는 86.8%, 교사는 94.3%가 유니세프아동친화학교에 만족
 - ② 학생 85.5%와 교사 97%는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존중 받는 느낌을 갖게 학생의 권리 뿐만 아니라 교사의 권리 존중에도 유니세프아동친화학교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입증
 - ③ 학부모 78.3%는 자녀가 선생님을 존중하도록 지도하게 됐다고 응답. 유니세프아동친화학교의 기본 개념인 서로의 권리를 알고 존중하는 문화 조성이 구성원 모두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토대가 될 수 있음이 확인
 - ④ 그 외 ▲권리와 책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제고 ▲학생의 참여 역량 강화 ▲학생의 시민성 향상이 주요 성과로 나타남

4) 그 외 아동에게 영향을 끼치는 주체이자 환경을 '아동친화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 아동친화기업 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권리와 경영원칙 적용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기업이 아동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보고, 아동권리 존중 및 보호 책임을 점점 더 강조하고 있음.

아동권리와 기업부문

15. 위원회는 대한민국 기업들의 국내외 경영활동으로 인해 아동권리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아동권리에 대한 기업 영역의 영향 관련 국가 의무에 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6호(2013),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및 이전의 권고(CRC/C/KOR/CO/3-4, para. 27)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을 위한 아동보호 프레임워크(child protection framework)를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한 프레임워크는 아동권리 침해를 보고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 영향평가,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를 포함하여야 하며, 모든 이해당사자가 아동권리 실현과 보호에 책임이 있음을 명확하게 한다.

- 기업은 기업활동은 제품과 서비스, 마케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아동에게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끼침. 유니세프아동친화기업은 국내 기업이 기업 경영 전반에서 '아동권리와 경영원칙(Child right and business principles)를 적용하며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의 책무를 다하는 글로벌 프로그램임.
- 기업은 아동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보호, 실현하기 위해 아래 10가지 아동권리와 경영원칙을 준수하며 아동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함. ▲아동권리존중책임, ▲아동노동철폐, ▲연소근로자 및 부모양육자 양질의 일자리 제공, ▲아동안전 보호 ▲제품과 서비스 안전성 ▲아동권리존중 마케팅 및 광고 ▲안전보장조치 적용 ▲긴급상황에서의 아동보호 ▲정부와 지역사회 협력강화
- 특히 기업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을 위해 '부모, 양육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아동을 충분히 지원하는 '가족친화정책(family friendly policy)를 준수할 책무가 있음. 유니세프는 기업이 아동권리존중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가족친화정책을 적용하고자 함. 가족친화정책의 핵심 4가지 원칙은 ▲유급휴직 보장 및 제도화 (남성 여성 포함) ▲모유수유 보장(시간,공간 등) 보장 및 제도화 ▲아동의 보육시설/환경 지원 ▲아동발달을 위한 지원(보조금 등)임.
- 기업의 아동친화사회 조성 노력 사례
유니레버,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식음료 마케팅을 중지하고, 청소년들의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등 책임감 있는 마케팅 선언(2022)

영국 온라인 안전 법안(Online Safety Bill)을 제정하여 글로벌 IT기업(구글, 페이스북 등)

온라인 아동 성착취 근절과 해로운 게시글을 제재(2020)

에스케이(SK)·엘지(LG)·포스코그룹 등의 가족친화경영 강화 - 난임치료와 시술을 위한 휴가 확대, 난임의료비 지원,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 출산 축하금 지원 등

○ 아동친화사법환경 조성

아동친화사법은 어린이가 아동권리를 보호받으며 공정하고 시기적절한 구제 수단을 찾아 적용할 수 있는 사법체계를 의미함. 아동친화적이고 아동권리가 존중되는 '아동친화사법 체계'를 만들기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필요함. 모든 아동은 법 앞에서 인정받을 권리, 법에 대한 동등한 접근, 법 앞의 평등처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짐. 모든 어린이가 사법체계 속에서 존중받고 보호받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어린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법 절차'를 아동친화적으로 조성해야 함. 또 상호작용하며 어린이를 만나는 관계자들의 인식을 증진시켜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내용으로 소통해줄 수 있어야 하며, 아동이 진술하는 공간이 아동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함.

○ 아동의 안전한 출생의료환경 조성 거주지에 상관없이 태어난 순간부터 모든 아동이 건강한 생애초기 1,000일(0세~만2세)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생존과 발달권 보장을 위한 공평한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함.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보장과 더불어, 모유수유 권장 및 모자동실 마련, 산전산후의 보건/의료/돌봄을 포괄하는 공공모자보건서비스 강화, 지역격차 해소 등을 통해 아동에게 친화적인 출생환경을 조성해야 함.

아동친화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과제

아동권리주류화를 위한 아동친화사회 조성 노력에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4가지 CRC 일반원칙에 근거하여 법제도적 개선과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함. 4가지 CRC 일반원칙에 근거하여, 아동친화사회 조성 노력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법제도적 개선과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함.

첫째, (CRC 2조, 비차별) 아동이 환대받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문화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의무화 하기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 협약 42조(협약의 홍보)에서도 명시하듯, 국가는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아동권리와 아동권리협약을 널리 알릴 의무를 가짐
- 사회 구성원 전반이 아동을 온전한 한 명의 인격체로 대우할 수 있는 아동권리존중 문

화 조성에 앞장서고,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표현들을 인식해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 포용적이고 비차별적인 문화'를 조성해갈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하고, 출신지,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해야 하고, 아동권리교육 의무화 필요함.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보장을 위해 출생통보제 통과되었으나, 외국인아동을 위한 출생등록을 위한 법제도 보완 필요하며, 미혼부모의 위기임신 지원 등의 포괄적 정책도 필요함.
- '아동기본법'은 다양한 정책 목적에 따라 수행되는 아동 정책의 기본적인 이념과 목표를 제시하고, 아동의 핵심적 권리와 국가, 사회, 가정의 책무 등을 '아동 중심'으로 규정하는 법임. 아동기본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함. 또한 이를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일본의 아동가족청과 같은 '아동전담 총괄조직'을 신설하고, 아동친화사회 조성 정책을 수립해야 함.

둘째, (CRC 3조, 아동 최우선의 이익 고려) 기업 및 정부, 사법관계자 등의 의무이행자들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아동 최우선의 이익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 아동권리주류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호, 증진,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를 포함한 의무이행자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함.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업, 사법, 행정의 변화는 아동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에서도 사법에서의 아동권리보장 (가사조정에서의 면접교섭권 등 아동의 들려질 권리), 기업의 책무 강조하고 있음.
- 기업은 연소근로자 및 양육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보호자의 유연한 근무제도 및 육아휴직 보장, 연소근로자 사망문제 등), 아동에게 안전한 제품과 서비스 제공(가습기 살균제 사고) 등의 아동권리 존중책임 이행을 인식해야 하며, 정부는 경직된 기업문화를 바꿀 수 있는 남성육아휴직 의무화 제도, 기업의 경영원칙에서 아동권리 고려가능하도록 아동권리를 포함한 인권실사 의무화, 영향평가 실시 의무화 등 아동 최우선의 이익을 바탕으로 법 개정 필요함. 또한 기업의 ESG경영에서 아동권리가 고려되도록 평가지표에 아동권리 관련 지표 추가해야 함.
- 지방정부의 아동친화정책을 포괄할 수 있는 중앙정부 단위의 아동친화사회 조성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 필요함. 아동권리영향평가, 아동옴부즈퍼슨, 아동권리교육 의무화, 아동 참여 제도화 등의 지방정부 단위의 아동친화적인 행정체계가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중앙단위의 상위법 근거 및 정책적 지원(인센티브 제공, 정책 연계 등)이 필요함.

셋째, (CRC 6조, 생존과 발달 지원)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아동은 태어난 순간부터 한 명의 건강한 인격체로 존중받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하며, 부모와 헤어지지 않을 권리를 마땅히 누릴 수 있고, 폭력이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또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며 발달할 수 있도록 교육, 사회보장서비스를 충분히 지원받고, 문화여가 놀이를 충분히 향유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함.
-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일반논평 등에서 명시한 것과 같이 국가는 모든 아동이 출생등록, 보육, 교육, 보건복지 등에서의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함. 장애아동, 이주배경아동, 난민아동, 북한이탈아동, 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 학교 밖 아동, 범죄피해 아동, 소년사법 대상 아동, 성소수자 아동, 보호대상아동, 입양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우선정책 수립 및 예산 배정 필요함.
- 모든 아동을 위한 공평한 기회 제공이 핵심임. 유니버설디자인, 무장애놀이터 등 아동친화적인 공간조성을 통해 모든 사람의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역적 격차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관점과 정책 수립 필요함.

넷째,(CRC 12조, 아동참여 및 아동의견 존중) 아동과 관련된 일은 아동당사자의 의견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반영되어야 한다.

아동권리주류화를 위해서는, 각 사회 체계 내(입법, 사법, 예산, 정책수립 등)에서 아동을 사회의 중요한 이해관계자이자 시민으로 인식해야 함. 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옹호하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권한을 부여해야함. 또 아동을 시민사회의 핵심주체로 인식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함.

- 아동이 아동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에 접근할 때 아동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법·행정 절차에서 아동이 직접 또는 대리인이나 적절한 기관을 통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사법 절차 내에서도 피해아동 및 증인을 위한 사법지침 등의 국제기준을 적용하여 아동친화적인 사법절차 마련하여 아동의 들려질 권리 보장해야 함.
- 아동청소년의회, 아동참여예산제, 아동총회 등 아동참여 기회와 의견전달은 많이 늘어남. 하지만 아동의 의견이 실제정책으로 반영되고, 아동에게 피드백이 제공되는 환류체계 마련은 아직 제도화되지 못함. 이에 입법과 행정절차 내에서 아동과 관련되고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사업을 결정할 때는 . 아동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아동의견을 반영하도록 절차 내에 아동참여절차를 포함시켜야 함.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

가 필요함.

- 무엇보다 아동의 시민의식과 참여역량 강화를 위한 '아동참여권 예산' 증대가 필요함.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아동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참여권 교육을 확대해야 함.
- 더불어 아동을 위해 또는 아동과 함께 일하는 입법, 사법, 행정부, 그리고 예비양육자를 포함한 보호자, 아동관련 시설 종사자, 그 외 다양한 성인 이해관계자들의 아동권리 인식제고가 필수적이며, . 대중을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 홍보 또한 확대되어야 함.

나가며 - for every child

- 초저출생 해결을 위해 대한민국 아동친화도 재점검 필요함 :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10시간이 넘는 아동들의 학습시간, 치열한 입시경쟁, 놀이여가시간 부족, 노키즈존 문제 등 한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한국은 아동을 혐오하는 국가인가"라는 질문을 함.또 최근 아이들을 인터뷰에서 아이들에게 행복한 정도를 손가락으로 표현하라고 했을 때 두 손이 아닌 한 손만으로 대부분 표현했음.
- 아동에게 친화적인 사회 조성을 통해 차별하고 차별받는 문화 대물림 막아야 함. : 노키즈존을 찬성하는 이유가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고 영업을 방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점도 충분히 이해함. 하지만 노키즈존에서 쫓겨나고, 거부의 경험을 한 아동이 과연 어떤 어른으로 자라날까 고민해야 함. 사회에서 자라나는 동안 노키즈존 등으로 포용을 경험하지 못한 아동은 나의 편익과 권리를 위해 간단히 타인의 배제와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될 우려가 있음. 또한 나이 뿐 아니라 성별 정체성 등 수많은 기준으로 아이들 일상 전반에 차별이 스며들어, 차별적 문화가 대물림되는 악순환이 될 수 있음.
- 아동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주변환경과 문화, 행동패턴 등을 아동친화적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임: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공간, 환경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패턴,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침.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불편을 감수하는 사회가 아니라 간단하게 불편을 제거하는 사회가 되지 않아야 할 것임. 노키즈존이나 공공장소의 지나친 상업화로 인해 어린이 놀이 여가공간이 제한 받지 않아야 함.
- 아동을 온전한 인격체이자 한 명의 시민으로 존중하고, 사회에서 함께 성장하는 경험 키워줘야함. : 아동은 현재와 미래의 주요한 이해관계자이자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민임.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포용을 경험하고, 올바른 시민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아동을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학교, 기업 등 당사자뿐 아니라 정치인, 언론, 학자, 아동단체 등 모두가 아동을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환대하는 인식 전환과 실천이 동반되어야 함.

토론

어린이의 '노 키즈 존' 경험과 어린이가 살고 싶은 사회
이 지 예 · 이 정 후 활동가

양육자의 '노 키즈 존' 경험과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

남 궁 수 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UN아동권리협약과 '노 키즈 존' 시정 권고의 의의
조 정 의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과장

'노 키즈 존'에 대한 법률적 쟁점과 입법과제
조 덕 상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변호사

토론 1.

어린이의 '노 키즈 존' 경험과 어린이가 살고 싶은 사회

이 지 예 · 이 정 후

활동가

안녕하세요, 저는 개봉초등학교 4학년 이지예입니다.

저는 차별이 다른 사람과 나를 다르게 대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노키즈존을 알게 된 것은 제주도에서 카페에 갔을 때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예쁜 카페가 있어서 가려고 했는데 문 앞에 노키즈존 이라고 써있었습니다. 엄마에게 물어보니 어린이들은 갈 수 없는 카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만 카페에 가서 커피를 사왔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음료를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카페 구경만 하려고 했는데도 안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린이라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어른들만 예쁜 곳에서 커피를 마시고 어린이들을 차별한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아주 나빴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은, 호주에서 온 사촌오빠와 덕수궁을 구경을 갔다가 근처에 아주 맛있는 와플 가게가 있어서 와플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눈이 아주 많이 오고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와플 가게는 포장하는 곳과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카페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페는 노키즈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을 맞으며 퐁퐁 언 손으로 덕수궁 담벼락에 서서 와플을 먹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호주에서 온 사촌오빠가 했던 말이 보호해야 할 어린이들을 왜 NO 라고 말하는지 한국 사람들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아직 어른들보다 힘도 약하고 키도 작고 잘 모르는 것도 많은데 어른들은 어린이들에게 방법을 알려주지 않고 나가라고 하는 것이 이상합니다.

요즘에는 노 중2존, 노시니어존 같은 어린이가 아니더라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른이 되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납니다.

노키즈존이라고 써있지 않아도 노키즈존인 것 같은 곳이 있습니다. 음료수는 안팔고 커피만 파는 카페는 노키즈존이라고 써있지 않아도 어린이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어른이 되면 노키즈존은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에게 기분 나쁜 경험을 해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어린이들이 물건을 망가뜨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건을 망가뜨리고 사과도 안하는 어린이와 어른들만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문앞에 노키즈존이라고 써놓지 말고. 여기서 조용히 해주세요 라고 써놓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다른 방법도 많은데 왜 노키즈존이라고 해서 어린이들을 못들어오게 하는걸까요?

저는 한국에서 어린이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라서 보호받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보호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배려해주세요.

어린이들이 바라는 세상

안녕하세요. 저는 개봉초등학교 2학년 2반 17번 이정후입니다.
저는 어린이들이 바라는 세상에 대해 어른들께 이야기 하려 합니다.

저는 저와 이름이 똑같은 키움의 이정후 선수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정후선수 처럼 야구 하는 것을 엄청 좋아합니다. 저는 이정후 선수처럼 야구선수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과 함께 야구를 너무 하고 싶은데 야구를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원래 야구를 하고 있었던 중앙공원이라고 있는데 아파트 안에 있어서 어른들이 시끄럽다고 야구를 못하게 합니다.

학교는 수업이 끝나고 나서 문이 닫혀 학교 운동장에서도 야구를 할 수도 없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어디 가서 야구를 해야 하죠? 저는 야구연습을 열심히 해서 야구선수가 되어야하는데 어디서 친구들과 야구연습을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매일 가서 야구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운동장은 어린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운동장에 못 들어오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학교가 노키즈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가 더 재미있어서 저도 친구들도 매일매일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학교가 더 재미있을까 생각해봤는데 글씨 쓰는 수업보다 친구들과 뛰어노는 수업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학교에 수영장이 있어서 지금처럼 더울 때 학교에서 물놀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살았을 때가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오면 아빠도 회사를 안가고 저랑 누나도 유치원에 안가고 집에 있었습니다. 아빠가 위험해서 회사에서 오지 말라고 해서 집에 있는다고 했습니다. 한국도 비가 많이 오거나 태풍이 오면 위험하니까 아빠 엄마도 회사에 가지 않고 우리도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키즈존이 모두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노키즈존을 만들지 말고 카페나 식당을 Be quiet 구간과 Shouting 구간을 따로 만들어 조용히 하고 싶은 사람은 Be quiet 구간으로 가고 어린이들 같이 소리 지르면서 뛰어놀 사

람은 Shouting 구간에서 놀게 하면 될 것 습니다. 어른들도 시끄럽게 떠들고 싶은 어른들이 많잖아요?

저는 특히 뛰어 놀고 소리지르는 거 좋아하는데 아무데서도 하지 못하게 하니까 태권도 학원 가서 축구학원 가서 뛰어 놉니다. 태권도학원 말고도 어린이들이 뛰고 소리지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어린이 영화를(애니메이션) 볼 때도 어린이들이 시끄럽게 한다고 나가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누나한테 들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만 볼 수 있는 영화관을 만들어주세요. 어린이들이 어린이 영화를(애니메이션) 볼 때 만큼은 떠들고 돌아다니면서 영화를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버스나 지하철에서 손잡이를 잡을 수 없어서 불편하고 넘어질까봐 불안합니다. 급정지하면 팔이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스와 지하철에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게 어린이용 손잡이를 만들어 주세요.

노키즈존을 만들지 말고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더 많이 생각해주고 어린이를 위한 장소와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있을 수 있는 장소를 더 많이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아빠 엄마가 일하고 빨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랑 같이 놀고 운동도 같이 하는 시간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노키즈존 말고 대한민국이 어린이들이 행복한 해피 키즈존이 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노력해 주세요.

노키즈존이 없는 세상. 학교가 재밌는 세상. 학교가 체육을 더 많이 하고 (신체활동을 더 많이 하고) 글씨 쓰는 수업을 줄였으면 좋겠다. 학교 운동장을 언제 어디든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토론 2.

양육자의 '노 키즈 존' 경험과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

남 궁 수 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아이들이 대통령이 된다면?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 양육자의 ‘노키즈존’ 경험과 ‘차별의 벽이 아닌 이해의 공간으로’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1. 양육자로서의 노키즈존 경험

1-1. 자녀에게 노키즈존을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

추운 겨울에 제주도에 아이 둘과 저 이렇게 셋이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해가 지는 분홍빛 하늘을 보자며 셋이 손을 잡고 바닷가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바람도 불고 캄캄해지고 너무 추웠기에 들어갈 곳을 찾다가 멀리서 카페를 발견하고 신나게 뛰어갔습니다. 문 앞에 선 순간, 한 단어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노키즈존”



기혼 페미니스트 모임 부너미 대표 이성경 인스타그램

“엄마 노키즈존이 뭐야?”

이 상황을 자녀에게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양육자들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설명을 해주려고 해도 아이들은 이미 몸으로 알아버렸습니다. 보루통한 목소리로 “난 아직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나는 못들어가는데?”부터 시작해서, “어른들도 시끄러울 때 있잖아.” 등등 자녀들의 물음에 아무리 부드러운 말로 대답을 한다고 하여도 『막힌 벽』과 같은 노키즈존의 존재를 옹호하는 답변은 어렵습니다. 단지 <어린이>라는 성장기의 일정 시기라는 이유만으로 확정적 방해자로 규정받고, 기회조차 박탈당해⁶⁾ 특정 공간에서 거부를 당한다는 것. 노키즈존 앞에서 양육자들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아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노키즈존이 계속 성행하는 한, 성장하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노키즈존의 존재를 알고 물을 것입니다. 어떤 답변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느

6) 직설, 이선옥, 2017.12.02

길 충격과 거절감을 상쇄할 수 없습니다.

1-2.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된 양육자들

경향신문은 2022년 8월31~9월1일, 서울하늘숲초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노키즈존에 대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 조사결과 총 86명 중 62.8%(54명)는 노키즈존이 ‘어린이에 대한 차별’이라고 응답했습니다. 83.7%(72명)는 ‘식당이나 카페 주인이 돼도 노키즈존을 만들 생각이 없다’고 했고 47.7%(41명)는 ‘성인이 된 뒤에도 노키즈존 시설에 방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2022년 2월 한국리서치의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는 ‘노키즈존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만나는 양육자들이 모두 노키즈존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찬성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김지혜 저 <선량한 차별주의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기울어진 공정성”이라고요.

차별로 인해 이익을 얻는 사람뿐 아니라 불이익을 얻는 사람 역시 질서정연하게 행동함으로써 스스로 불평등한 구조의 일부가 되어간다. (중략) 우리의 생각이 시야에 갇힌다. 억압받는 사람은 체계적으로 작동하는 사회구조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불행이 일시적이거나 우연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차별과 싸우기보다 “어쩔 수 없다”며 감수한다.

+ 기울어진 공정성 1 - 공동체에서 분리된 아동과 양육자

한국이 대가족제였고, 8~90년대 골목문화이던 시절에는 주변에서 어린이들을 보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핵가족화로 변화와 아파트라는 공간상의 변화로 아동은 사회 일반의 구성원이 아닌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즉 대가족일 때는 동생으로서 혹은 조카로서 아동을 경험했습니다. 골목문화였을 때 역시 오고가는 거리에서 아동들을 마주치고 그들의 놀이문화를 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요즘의 아동들은 어린이집, 놀이터, 유치원, 학교, 학원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만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일반 성인들과의 접점은 협소합니다. 도시화된 사회 속에서 소위 공터라는 것도 없어진 현재, 아이들은 사교육에 의한 놀이만이 가능합니다. 삶을 공유하며 마주치는 공간이 사라지면서 단절되기 시작했고, 안전 혹은 아이들은 시끄럽다는 등 이유로 아동에게 허락된 공간은 점점 제한되고 있습니다. 놀이터 역시 거주주인에게만 허락된 놀이터 등 제한된 공간이거나 그나마도 유아를 위한 놀이기구만 있거나 구기종목 금지, 오후 6시 이후 놀이 금지 등의 경고문이 붙어있어 요즘 아이들은 겨우 편의점이나 무인가게 등에서 친구들과 어울립니다.7) 과거 대가족, 골목문화에서는 아이는 사회공동체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문화이고, 공동의 책임이라는 유대감이 존재했습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세대가 동기(同氣), 혹은 이모, 삼촌으로서 아동이라는 성장기를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7) 경향신문 투명장벽도시, 스포트라이트부-서의동 기자, 배문규 기자, 김한솔 기자, 김지혜 기자/전국사회부-김보미 기자/디자인팀-현재호 기자/데이터저널리즘팀-이수민 기자, 박채움 기자

현재 우리에게 아동이란 존재는 아동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거나 출산을 경험하기 전까지 대부분의 성인 특히 청년의 일상에서는 분리된 존재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양육자들도 출산, 육아의 과정 속에서 스스로가 아동을 처음 접해본다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렇게 아동과 양육자는 시간이 흐르면서 공동체와 서서히 분리되었고, 분리가 일상화 되자, 빠르게 대상화되었습니다. 즉, 현재 대한민국 현실에서 양육자와 양육자 외의 사회구성원은 과거와 같은 상호호혜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권력과 힘의 방향은 언제나 사회의 약자들을 향해 가기 마련이고, 특히 공간이라는 힘 안에서 아동과 양육자들은 약자, 대상화 - 특히 감시와 감독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회로부터 환대받지 못하는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공간은 점점 협소해지고, 아동과 양육자들은 감시와 감독의 대상이 되며 점점 약자화 되었습니다. 감독의 대상이 된 양육자들은 눈치를 보고 미안하다는 말을 거듭해서 한다거나 시키지도 않았는데 머물렀던 자리를 필요 이상으로 치우고 나오기도 하고, 되도록 빨리 먹고 일어나거나 자녀들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 미디어기기를 준비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싫어 아예 외식을 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기울어진 공정성 2 - “맘충”이라는 혐오표현과 “노키즈존”의 양육자에 대한 편견을 확대시키는 악순환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디나 있기 마련입니다. 블랙컨슈머를 연구한 논문⁸⁾에 따르면 인구통계학적으로 30대가 블랙컨슈머로서 ‘상습성’이 높다고 나타납니다. 일부의 30대가 그런 행태를 보였다고 해서 30대라면 상습적 블랙컨슈머일 것이라고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반면, 양육자의 경우는 민폐를 끼치는 “맘충”으로 쉽게 대상화, 일반화합니다. 일부 불편을 초래한 양육자의 행동을 일반화하여 편견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맘충”이라는 혐오표현을 생산했으며, 혐오표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또다시 편견을 강화하고 노키즈존을 양산했습니다. 차별과 혐오를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의 한 축에 노키즈존이 있습니다.

노키즈존에 반대하는 논리에 “No Bad Parents Zone”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Kids Care Zone”도 그 예입니다. 마치 배려한 언어인 듯 하나 양육자 입장에서 양육자에 대한 편견을 담은 차별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8)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블랙컨슈머 성향과 성향이 보복의도와 자기정당성에 미치는 영향 - 신봉섭 (경희사이버대학교)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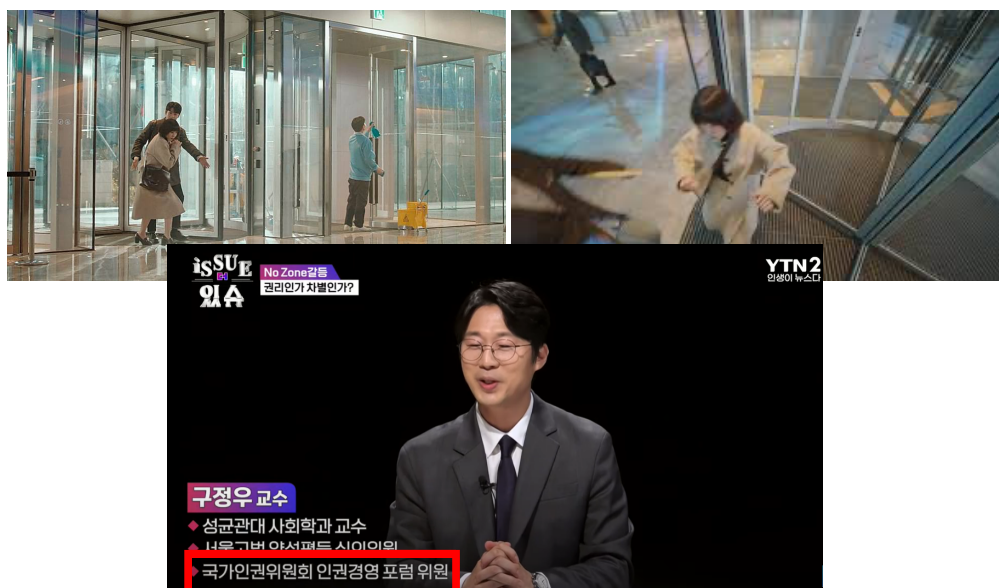
+ 기울어진 공정성 3 - 댓글로 본 우리 사회의 양육자혐오 실태

2023년 6월 26일자 KBS의 “회전문에 낀 5살 아이 다리 골절...안전관리 사각지대” 라는 제목의 기사가 났습니다. 기사의 요지는 회전문의 안전관리에 구멍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회전문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점검을 하기에 회전문 안전 점검 자체가 부실하며,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기사를 찾아서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회전문은 몸이 닿으면 멈춰야합니다. 아이의 발이 회전문에 끼인 사고를 목격한 성인이 와서 회전문을 멈추려고 손으로 당겨도 멈춰지지 않고 회전문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그러는 중 아이의 골절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상황이 영상에 나오고, 기사가 리포팅을 했음에도 비상식적으로 양육자를 비판하며 ‘회전문을 노키즈존으로 하라. 회전문에 탈때는 아이를 안고 타라. 백프로 부모책임, 엄마책임이다. 핸드폰 보며 놀고 있었느냐, 백화점 빨리 들어가려고 애는 안봤느냐, 니가 낳은 새끼 니책임이다. 아이들 애착인형 좀 못들고 다니게 해라.’

저희가 놀란 점은 댓글의 내용도 물론이지만, 그 양과 공감수입니다. 200여개에 달하는 댓글

글 내용을 모두 소개하려면 이 토론문을 다 채워도 부족할 것입니다. 저희 단체와 활동가들이 인터뷰이 보호를 위해서라도 댓글창을 닫아달라는 요청을 KBS 측에 보냈고,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 기사에서 댓글창을 닫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회전문 씬이 생각났는데요. 백상예술상에서 연출상을 수상한 유인식 감독은 “회전문 앞에 서 있는 세상의 모든 (영우)우영우들에게 부듯하게 전해졌으면 좋겠다”며 우영우들을 응원하는 메시지에 많은 이들이 크게 공감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중 회전문 장면〉

회전문 앞의 어린이와 양육자. 우리에게 송곳같은 비난의 언어들이 폭발하듯 쏟아져 내리는 것은 이 사회에 “양육자 혐오”가 자리를 잡았다는 하나의 예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기자회견을 하면 애 안보고 어딜 나왔냐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기자회견장에 나오면 아동학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혐오로 쌓은 장벽 안에 갇힌 느낌입니다. 지난 6월 27일에 방영된 YTN2채널 이슈더있슈[클립 29회] 성균관대 사회학과 구정우 교수가 출연, “사실상 노키즈존은 노 맘충존입니다.”이라고 발언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노 맘충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조금 애를 소홀하게 관리를 했더니 내가 갑자기 맘충이 돼있는 거예요. 나를 벌레에 비유해. 맘충이야.” 등 여러 번 반복해서 발언했습니다. 구정모 교수는 국가인권위 인권경영 포럼위원으로 해당 프로그램에도 인권위 위원으로 소개합니다. 국가인권위 위원이라는 사람도 혐오·차별어를 방송에서 남발해도 될만큼 이 사회는 양육자 혐오에 무감각합니다.

2. 노OO존을 넘어, 차별의 벽이 아닌 이해의 공간으로

2-1. 우리에게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양육자 혐오는 분명 존재합니다. 이 사회는 아닌 척 합니다. 양육자 혐오에 대해 사회적 환기가 필요합니다. 여성혐오, 아동에 대한 몰이해, 소수자를 배려할 만큼 현대의 여유가 없는 젊은층, 결혼과 육아가 특권이라 여기는 인식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얽히고설킸고, 그 비난의 화살이 양육자에게 향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주시시오.

노키즈존 관련 인터뷰를 저와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이렇게 세 명이 경향신문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인터뷰 기사 아래에는 수많은 혐오 댓글이 달렸습니다. 경찰에 고발했지만, 혐오댓글을 제 목소리로 읽어야만 고발이 된다는 2차 가해를 당했고, 모든 고발은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저희의 고발은 첫 번째, 국가기관인 경찰의 혐오·차별어에 대한 인식수준을 알게 했습니다. “개돼지”라는 문맥과 관련 없는 단어를 사용했고 “싸질러놓은 애들의 책임을 지지 않는 자들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이라도 작성자가 위아래 적어놓은 다른 댓글과 내용이 통일된다는 이유로 ‘혐의 없다’고 하였고, “아이들보다 니들이 문제다 맘추웅들아”라는 댓글에서는 맘충이라는 댓글이 혐오가 아닐 수 있으며, 일반인이 맘충이라는 단어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가변적이라며 ‘혐의 없다’고 하였습니다. 모욕적일 수 있지만 모욕죄가 아니며 차별적이지만 차별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입으로 똥을 싸네.”라는 표현에도 경기고양경찰서의 결정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지만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 아니라고 일축합니다. 불쾌하고 무례한 건 인정하지만 이미 우리는 엄마, 여성양육자로서 인격적 가치가 무너졌는데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결론적으로 이런 혐오댓글은 해도 괜찮다는 학습만 하게 해주었습니다.

두 가지 결론은 무엇 때문입니까? 차별금지법이 없어서입니다. 비단 아동 청소년 양육자뿐 아니라 수많은 소수자들을 향한 비난에는 “**혐오는 자유다.**” 라는 주장이 빈번합니다. 마음 속으로만 감정을 가지면 자유이겠지만 소수자를 향하여 이렇게 “**혐오는 내 마음이다.**” 표현으로 내뿜는 순간, 그를 파괴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범죄입니다. 이 사회는 혐오표현에 아무런 재재가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차일피일 미루며 이제 혐오표현은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넘어서 일종의 권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두고만 보실 겁니까? 우리에게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유언비어들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공론의 장으로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나와서 본격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시도 해주십시오.

2-2. 아동은 시민이며 권리주체자

앞서 말씀드린 제주도에서 노키즈존 카페, 차별의 벽을 경험한 이후 저의 아들, 딸은 국회 앞에서 이렇게 시위를 했습니다.



노키즈존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적어보자는 저의 말에 저의 아들은 이렇게 썼습니다. “**노키즈존을 들으면 아이들의 귀가 썩어요!!!**” 저는 이 표현이 결코 과장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존재가 부정 당하는 단어인데 귀가 썩는다는 건 오히려 약한 표현이 아닐까요?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이지예, 이정후 어린이 활동가를 비롯하여 저희 단체에는 수많은 어린이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노키즈존을 반대하는 ‘어린이차별철폐운동’뿐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저지를 위한 ‘탈석탄행동’, 정부탄소배출감축목표 위한 헌법소원 ‘아기기후소송’ 등을 비롯한 환경기후정의 활동, EBS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한 미디어리터러시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비단 정치하는엄마들뿐 아니라 다양한 시민단체에서 어린이 활동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구청 단위에서 “아동친화도시”를 위해 초등학교, 유치원에서 아동권리교육을 받고 아동권리모니터링단과 아동 옴부즈퍼슨을 운영하는 사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단체를 비롯, 대부분의 어린이활동가들에 대한 뉴스나 리포트에 대한 여론은 **“부모가 시켜서 나왔구나.”**입니다. 아동 스스로는 권리 주체임을 인식하고 있지만, 아동이 권리주체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성인입니다. 아동친화도시가 허울 뿐인 여성친화도시 간판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동, 담당공무원이나 기관만이 아는 아동친화도시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아동의 권익과 권리를 이해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아동기본법>의 입법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아동기본법에 아동, 청소년 당사자가 얼마나 참여했는지 궁금합니다. 얼마나 많은 아동, 청소년 당사자들이 아동기본법에 참여했는지 또한 더 많은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동기본법에 바라는 점은 아동이 권리 주체자임을 인식시킬 수 있는 정부조직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부처에서 아동, 청소년 관련 부처의 이름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혹은 <아동권리보장원>입니다. 관련 부처 이름부터 다분히 시혜적입니다. 핀란드의 국가아동전략부가 있습니다. 중립적이면서도 아동 청소년에게 시혜적이지 않은 조직명이 가능합니다.

유럽평의회 아동권리를 위한 전략(2016-2021)에 따르면

“2. 아동의 참여(Participation of children)에서

- 아동에게는 피청취권과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
- 아동 관련 법률, 정책 및 실행계획 개발·시행·평가에 있어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함.
- 회원국들은 아동 권리와 관련된 모든 상황에서 아동과 협의해야 함” 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정부기구를 마련되는 아동기본법이 되길 바랍니다.

2-3. 제3의 장소

레이 올든버그는 책 <제3의 장소>에서 어린이들이 ‘어슬렁대며’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어른들과 함께 자유롭게 어울렸던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3의 장소’는 나이에 상관 없이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었던 펍이나 커피숍 등 독립적이면서도 따뜻한 장소입니다. 이곳엔 대체로 어린이들도 출입할 수 있었죠.

아이들은 가게의 ‘민폐’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식당 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저자는 20세기 초중반 리버파크의 아이들이 어떻게 가게에서 돈도 없이 앉아 놀면서도 가게 주인, 손님과 어울릴 수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리버파크의 아이들은 메인 스트리트에서 때와 장소, 즉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에서 놀아도 되는지를 금세 배웠다[...]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에 음식점에 가면 한구석 칸막이 좌석에서 포커 게임을 하는 여덟살짜리 아이들을 볼 수도 있었다. (중략) 아이들은 손님이 없는 시간에도 그 장소가 살아있게 만들어 주는 존재였다. -레이 올든버그, <제3의장소>(이하 동일)”

즉 리버파크의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물려다니고 관찰하고 어른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의 관습과 예절을 배웠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엔 적당히 노닥거리다가, 손님이 많아지면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고 일손이 부족할 땐 가게일을 자진해서 돕기도 했죠. 아이들은 손님이 없을 때도 북적이고 항상 활기 넘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으므로 가게 주인들로서도 그닥 손해가 아니었다고 하네요.

술 마시는 어른과 아이들이 뒤섞여 있는 게 자연스러웠던 ‘폴라야 클럽’에서도 아이들은 점잖게 굴었습니다. 바텐더가 아이들에게도 어른과 똑같이 진지하게 대해줬기 때문이죠. 아이들은 바텐더 앞에서 자신이 마치 어른이 된 것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즉, 바텐더는 어린이를 어엿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취급해주었던 것이죠.

통상 아이들이 공공장소에서 항상 제멋대로 울부짖고 소란을 부린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어른과 같은 대접을 받게 되면 스스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의젓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 책에는 미국 오하이오주 출신 한 동료의 이야기도 등장하는데요. 그는 어렸을 때 항상 아버지의 손을 잡고 동네 드러그스토어에 가서 어른들의 대화를 두근대며 들었던 경험을 두고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경험”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드러그스토어에서 아버지 옆에 앉아 어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정치와 사회 문제를 배우고 일찌감치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는 교과서나 동화책만으로 얻기 힘든 경험이었죠.

동네가 아이들 역시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 주었기에 아이들은 어른처럼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자연스럽게 예절과 삶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⁹⁾

책 내용을 소개한 칼럼의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우리에게서 제3의 장소 그리고 제 3의 시간, 제 3의 기회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아이들이 성인의 역할 놀이를 할 수 있고, 그런 아이를 진지하게 동등한 인격자로 받아들여주는 공간. 그런 기회를 충분히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오케이키즈존이나 웰컴키즈존은 대안이 되기 어렵습니다.** 저희 정치하는엄마들은 오케이키즈존과 웰컴키즈존에 대해 우려합니다. 오케이키즈존은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그쪽으로 가라는 정당한 대안이 될 뿐 아니라, 사회와 아동과 양육자를 만나게 하기 보다 분리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양육의 공공성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평가와 비난으로만 이뤄지는 현실. 이 속에 빠진 고리는 많은 시민들이 아동을 모르고 아동을 겪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단절된 양육자와 아동들 역시 사회와 소통하는 공간과 기회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특정한 누구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환대를 제공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경향신문의 기획연재 “투명장벽도시”¹⁰⁾에 따르면 다이애나랩 ‘차별없는가게’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독립예술창작집단 다이애나랩은 2018년부터 ‘차별없는가게’ 프로젝트를 이어오고 있고, 햇수로 5년째. 카페, 식료품점, 빵집, 음식점, 병원, 약국, 운동센터, 서점 등 30여곳이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에 오케이키즈존이 아닌 제3의 공간, 차별없는가게 등을 제안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새로 공간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동네에 기존에 모든 세대가 방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공간이 아이들과 양육자도 아우르는, 차별 없는 공간이 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교육 역시 이러한 취지로 양육자만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아니길 바랍니다. 매너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받는 것보다 서로를 이해의 원 안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양육자와 아동,

비양육자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9) 경향신문 인스피아, 김지원 기자 “노키즈존 : 죽은 도시에서 아이 키우기”

10) 경향신문 스포트라이트부-서의동 기자, 배문규 기자, 김한솔 기자, 김지혜 기자/전국사회부-김보미 기자/디자인팀-현재호 기자/데이터저널리즘팀-이수민 기자, 박채음 기자

2-4. NO 노매너존¹¹⁾

도시 중심의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 청소년들의 놀 곳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제3의 장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린이, 청소년은 성인과 함께 있음으로서 사회 규범을 배우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비용을 낸 만큼 방해받고 싶지 않은 고객과 영업의 이익을 취해야 할 업주와의 이해관계와는 아직도 상충된다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헌법과 UN권리협약을 기준으로 “노키즈”라는 전면적인 접근 금지 대신 좀 더 적극적으로 방해 행위에 대한 조치를 공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즉,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차별을 덜 하고도 가능한 다른 방법이 있는가?’에 해당하는 조치입니다.¹²⁾

노키즈존을 비롯해 노OO존은 우리 사회의 무관용성을 보여줍니다. 아이들의 산만한 행동과 울음소리, 어르신들의 새로운 것에 대한 느린 학습 등은 악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다른 구성원이 비의도적으로 끼치는 불편함에 대해 관용해야 한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나에게 아무 불편함을 주지 않는 존재만 모아놓은 사회가 존재할까요? 인간은 일생동안 다른 사람을 불편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00년의 인생동안 다른 이의 도움과 관용과 이해 없이 독립적으로 생존가능한 시기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흔한 이야기이지만, 우리 모두 아이인 적이 있었고, 이제 곧 노인이 됩니다.

“노키즈”-어린이, 양육자, 청소년 혹은 “노시니어존”, “노유투버존”, “노래퍼존” 등으로 『존재』로 기회를 박탈할 것이 아니라, 『특정 행동』을 근거로 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소방안전교육이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듯이 공공장소 예절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¹³⁾

마지막으로 지난 2022년 어린이날을 맞아 실린 한겨레의 기사의 일부와 저의 자녀들의 노키즈존 반대글을 공유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대통령 된다면 뭐 하고 싶니?...어린이들 답변은 어른보다 낫다 / 이유진 기자

어린이날 100주년을 하루 앞둔 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국 초등학교 4~6학년생 1841명에게 어린이 존중 및 사회인식 영역 등을 주제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통령이 된다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고 싶냐는 질문(주관식)에 ‘차별 없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245명)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다.

11) [와글와글] 다시 불붙는 '노키즈존' 논쟁...필요한 건 '노-노매너존" MBC 신경민 리포터 2023.05.04

12) 직설, 이선옥, 2017.12.02

13) '노키즈존 확산 어떻게 볼 것인가?' 경기연구원, 김도균, 유보배 연구원, 2016

저는 당촌초등학교 1학년 김한나입니다.

저는 노키즈존을 없애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불편해요.

내가 어른이, 아니라고

내가 그냥 어린이라고

음식점 아니면 카페를 못 들어가게 하면

난 아아아앙!!! 울고싶어요.

어른들도 아이였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땐 노키즈존이 없었죠?

어린이들이 노키즈존을 배워서

나중에 어른들이 못들어 오게 할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나쁜 걸 가르쳐주지 마세요.

노키즈존은 싫어요.

어린이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마세요.

끝입니다.

저는 열 살 김나단입니다.

저는 노키즈존을 반대해요.

노키즈존은 어린이에게 차별입니다.

조용히 해야 하면 조용히 하자는 규칙을 써주세요.

노키즈존이라고 하지 마세요.

안전해야 하면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노키즈존이라고 써 붙이지 말고요.

우리 어린이도 규칙을 배우고 지킬 수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어른들도 규칙을 지키는 것,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법을 아직 배우는 중이잖아요.

배우는 중인 어른들과 우리 어린이들이 모두 함께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들,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를 나가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같은 어른들, 힘있는 어른들에게도 함께 규칙을 만들고 지키고,

서로 이해하자고 얘기하는 진짜 어른이 되어주세요.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만드신지 100년 된 오늘

2022년의 열 살 김나단 어린이가 어른들에게 외칩니다.

차별 대신 함께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토론 3.

UN아동권리협약과 '노 키즈 존' 시정 권고의 의의

조 정 의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과장

UN아동권리협약과 ‘노키즈 존’ 시정 권고의 의의

조정희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장)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제적 의의는 권리주체로서 아동관을 정립하고, 이에 따라 아동을 대하는 방법과 자세, 양육, 제도 및 정책방향의 기본이념을 정한 것입니다. 협약의 기본이념은 차별의 금지, 아동최우선의 이익 등은, 생명존중, 아동의견 존중으로, 이러한 아동권리의 이념 실현은 궁극적으로 인류의 존속과 평화사회를 추구함으로써 인류적 과제를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국제기준의 국내이행은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인권위는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을 모니터링하고 해당사안에 대해 권고하는 준국제기구로서, 유엔 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와 일반논평,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등의 국제기준에 따라 아동관련 정책권고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키즈 존 관련 사안 뿐만 아니라, 학교 내 휴대폰 소지제한, 학생들의 용모 및 두발 제한, 체벌 등 다양한 유형의 아동청소년 권리침해에 대해 권고하였으며, 형사미성년자 연령하향에 대한 의견표명, 청소년노동권 증진, ‘린이’ 표현에 대한 아동인권침해 의견표명, 청소년 정치적 참여권 증진 등 정책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정부에 정책권고를 해 왔습니다.

주요 노키즈 존 관련 진정사건은, 카페 및 음식점 등 아동 출입 제한, 아파트관리 사무소 헬스장 등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아동 출입 제한, 도서관 출입시 나이제한, 백화점의 우수고객을 위한 라운지의 10세 미만 아동 이용 제한 차별 등 2017년 노키즈 존 차별진정사건 권고후 다양한 노키즈 존 진정사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사건 대부분 조사 중 아동출입 제한이라는 진정원인이 해소되어 진정이 취하되거나 해당 상업시설이나 공공기관에 아동출입 제한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최초 노키즈 존관련한 인용사건은 파스타, 스테이크 등 아동들이 선호하는 음식을 판매하는 제주 소재 A식당에서 13세 이하 아동의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사업주에게 향후 A식당의 이용대상에서 13세 이하 아동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진정인은 지난 해 9세 자녀를 포함한 가족과 식사하기 위해 A식당을 방문했으나, 식당 측은 13세 이하 아동은 이용할 수 없다며 진정인 가족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진정인은 아동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A식당 측은 아동들의 안전사고 발생과 분쟁,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일부 아동과 부모들로부터 어려움을 겪게 돼 이용 제한 대상을 13세 이하 아동으로 하게 됐다고 주장했으나, 인권위는 상업시설의 운영자들은 최대한의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이들에게는 헌법 제15조에 따라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으나, 이 같은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특정 집단을 특정한 공간 또는 서비스 이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경우 합당한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A식당의 경우 파스타, 스테이크 등 이탈리아 음식을 판매하는 곳으로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유해한 장소가 아니며, 이용자에게 시설 이용상 특별한 능력이나 주의가 요구되는 곳도 아니기 때문에 식당의 이용 가능성과 연령 기준 사이에 합리적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모든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모든 보호자가 사업주나 다른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은 아니며, 무례한 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다른 이용자들도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동 및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식당 이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일부의 사례를 객관적,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화한 것에 해당하고, 특히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2013년 일반논평을 통해 세계 곳곳의 공공장소에 대한 상업화가 심화되면서 아동에 대한 관용이 줄어들고, 공동체나 공원, 쇼핑몰 등에 대한 아동의 출입 제한 조치로 인해 아동은 ‘문젯거리’, ‘문제아’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것을 우려했고, 이러한 아동에 대한 배제는 아동이 시민으로서 성장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한편, A식당 측이 주장하는 영업상 어려움에 대해서는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에 대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영업에 방해가 되는 구체적인 행위를 제시하고, 경우에 따라 이용제한 또는 퇴장요구 등이 가능함을 미리 고지하는 등 다른 방법을 통해 풀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얼마전 감사원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안된 영유아 2,236명을 발견했고 이중 고위험군 23명에 대해 추적한 결과 이미 아동 4명의 사망 사실이 드러났고 전수조사를 벌이면서 관련 사건의 충격적인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지 3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동은 하나의 인격체로 권리의 주체로 온전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생명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 모두 아동이 자신의 인격을 존중받으며 온전히 사랑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토론 4.

'노 키즈 존'에 대한 법률적 쟁점과 입법과제

조 덕 상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변호사

‘노 키즈 존’ (아동 출입 금지 영업장)에 대한 행정적 규제 방안 검토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조 덕 상

1. 여는 글

필자는 약 2년 전 여름, 가족 여행 중에 ‘노키즈존’을 갑자기 맞닥뜨린 적이 있었다. 당시 8세, 6세였던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하던 중 아이들이 좋아하는 초밥을 먹으러 미리 알아본 초밥 식당에 가기로 약속했는데, 어렵게 찾아가던 식당 외부 메뉴판에 ‘만 7세 미만 아동 출입 금지’라는 내용이 붙어 있었다. 필자의 신념(?)에 따라 안 가고 싶었지만, 그간 계속 기다린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러기도 어려웠다. 하는 수 없이 둘째에게 ‘나이를 물어보거든 7살이라고 대답하라’고 말해주고는 들어갔더니, 다행히(?) 나이를 묻지 않아 조용히 먹고 나왔던 기억이 있다. 필자가 ‘노키즈존’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그 작은 일화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감정 때문이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3세 이하의 아동 출입을 금지한 식당의 행위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차별행위를 중지할 것을 권고하였지만, 그 권고가 무색하게 ‘노키즈존’을 표방하는 식당이나 숙박업소 등은 그사이 꾸준히 늘어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영업 행위를 예방하거나 규제하기 위한 노력이 불충분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유지를 위한 출산 문제에만 관심이 있을 뿐, 아동이 평등한 시민으로 자리잡는 것에는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적대적인 사회 분위기를 방치해왔다.

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노키즈존’ 과 같은 영업행위는 헌법상 영업자의 ‘직업 수행(영업)의 자유’나 다른 고객들의 ‘행복추구권’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아동이 아동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헌법 및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우선 보장되어야 하는 ‘인권’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아동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금지할 수 있는 영업자의 자유와 아동이 없는 평온한 공간을 누릴 수 있는 다른 고객들의 자유는,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개방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유와 서로 충돌하는 기본권으로, 이를 조화롭게 해결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명제는 잘못된 것이며, ‘노키즈존’은 사인의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이자 차별 행위라는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을 전제로 필자는 영업자들에게 ‘노키즈존’과 같은 영업행위를 하지 말자고 권유, 교육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행정제재 수단을 법령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동을 비롯한 모든 사회적 소수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는 공동체에서 금지된다는

메시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명하게 표현해야 할 시점이라고 하겠다.

2. ‘노키즈존’은 ‘기본권’이 아닌 ‘욕망’, ‘차별행위’에 불과하다.

필자가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논문 등 관련 자료를 찾아본 결과, 학술 논문 1개를 겨우 찾을 수 있었다¹⁴⁾. 요지는, ‘노키즈존’을 운영할 수 있는 영업자의 직업 수행(영업)의 자유, ‘노키즈존’을 누릴 수 있는 다른 고객들의 자유와 아동이 차별 없이 영업장에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자유는 모두 헌법상의 기본권에 해당하고, 이들 간의 충돌 상황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사실 이러한 논지는 노키즈존을 바라보는 사회 일반의 시각¹⁵⁾과 큰 차이가 없다.

노키즈존에 대한 한국 사회 성인들의 인식은 대체로 아동과 아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부모들 때문에 노키즈존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영업자가 영업장 전체또는 일부를 노키즈존으로 운영하는 것을 영업자의 영업의 자유이자 다른 고객의 행복추구권 또는 아동의 안전에 대한 배려 등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이와 유사한 내용의 조사 결과가 누적되면서 노키즈존의 운영은 어느새 영업자가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의 하나가 되어 버렸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의 인식 조사 결과에 대해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 ① 노키즈존의 원인이 ‘아동, 부모 또는 성인 영업자, 고객’이라는 대립구도 안에 있는 것인가. ② 아동을 임의로 배제하는 영업자의 행위와 아동을 배제하고 싶은 고객들의 마음은 과연 ‘권리’인가. 우리는 ①번 질문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노키즈존’의 유행에는 아동을 성인과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하지 않는 각종 사회적 환경과 제도, 아동의 안전과 아동이 유발한 각종 결과에 대한 책임을 사회, 공동체가 아닌 개개인에게 떠맡기는 분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애초에 저런 대립구도를 상정하고 시민들에게 어느 쪽이 잘못이냐고 묻는 것 자체가 이 문제를 지극히 왜곡해서 바라보는 것에 불과하다. 저렇게 첫 단추부터 잘못 설계된 조사에서, 무엇이 정말 권리인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이 문제를 성인들에게 권리 간의 대립 문제로 물어보게 되면 ‘아동의 권리보다 성인들의 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반인권적 결론이 정해진 수순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②번 질문에 답할 차례다. 영업자가 ‘노키즈존’을 설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❶ 아동이 영업장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영업을 방해하고 다른 고객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 ❷ 아동이 영업장에서 안전사고를 당할 수 있다, ❸ 아동에게 손해가 발생했

14) 김정수, “아동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헌법적 과제- 노키즈존 관련 정당성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37권 4호, pp. 27-57.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15) 한국리서치에서 2021. 11. 12. ~ 15. 전국의 만 18세 이상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키즈존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및 2016. 2. 17. 경기연구원에서 발행한 “이슈 & 진단 - 노키즈존 확산, 어떻게 볼 것인가?” 보고서에 인용된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였음.

을 때 영업자가 과도한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조금만 깊게 생각해보면 위 3가지의 이유가 모두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아동이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그동안 있었으니 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이유로 모든 아동을 출입 금지하는 행위는, 과거 인종차별주의 시대 백인들이 유색 인종들의 출입이나 서비스 이용을 금지했던 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인종차별은 이제 금지시되는 행위가 되었다고 하겠지만, 그 본질상 큰 차이가 없는 아동의 출입, 서비스 제한은 왜 이렇게 관대하게 용인되는 것일까. 더 극단적인 예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출입이나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시정명령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아동이 영업을 방해하고 다른 고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출입이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받는 것은 장애인 차별과 비교하였을 때 그 심각성이나 유해성이 적거나 없는 행위인가.

필자는 아동에게 유난히 가혹한 이런 차별적 인식의 뿌리에는, 한국 사회에서 ‘이익’, ‘편리함’, ‘기호’에 불과한 것을 ‘권리’, ‘인권’인 것으로 착각하는 사회적 착시 현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강학상 용어로 쓰이는 ‘기본권의 유사충돌’을 떠올려보자. 예술 표현을 위한다며 사람을 살해하거나 중대한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예술 표현의 자유와 생명권의 경합, 충돌 상황이 아니라, 개인이 부당한 이유로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한 것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아동의 구체적인 침해 행위가 없는데도 처음부터 아동이라는 이유로 이들의 출입을 막을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보호받는 권리라는 게 과연 존재하는가. 영업주의 ‘직업 수행(영업)의 자유’나 고객들의 ‘행복추구권’의 보호범위는 무제한이 아니며, 굳이 헌법 제37조 제2항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다른 동료 시민이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넘어서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이익’, 더 나아가 ‘욕망’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의 헌법상, 국제 인권 규범상 보장된 인권이 오히려 ‘특권’이나 ‘권력’이라는 식으로 이해되고, 그들로 인해 다수자들의 ‘권리’(교권, 남성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오해가 사회 각 영역에서 자주 관찰된다. ‘인권’, ‘권리’는 개인의 소유물로 단순 치환되는 개념이 아니라, 사회 안에서 어떠한 상태가 보장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와 그 당위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다른 시민들이 어떤 의무를 다해야 하는지를 포함하는 ‘규범’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없이, 각자의 이익이나 편리 또는 힘이나 우열 관계에 쉽게 ‘권리’라는 이름을 붙여 대립구도를 만드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 우리는 ‘노키즈존 문제’에서 이러한 오해를 견어내고, 헌법과 국제 인권 규범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에 분명히 서야 한다.

더 나아가 ‘노키즈존’을 통해 아동의 안전을 보호한다거나, 영업주의 과도한 법적 책임 부담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영업주와 아동 본인, 아동의 보호자 모두가 각각 아동의 위험에 맞는 안전 의무를 부담한다는 기본원칙을 무시한 채, 오로지 아동 당사자를 배제하는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차별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아동의 안전 사고 비율이 높다고 해서 그것이 곧 영업주가 아동의 출입 및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영업장에서 벌어지는 아동의 안전 사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아동

의 출입이나 이용을 막는 것은 위험의 ‘해소’가 아닌 ‘회피’에 불과하다. 또한 그런 논리라면 노인이나 장애인, 더 나아가 잠재적 부상 우려가 높은 모든 고객들에 대해서 그렇게 조치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결론을 받아들일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권리가 아니라 이익과 편리함의 문제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상황에서, 아동의 안전은 모두가 함께 합의, 조정을 통해 만들어가는 목표가 아니라, 그저 영업주 입장에서 피해야 하는 시한폭탄과 같은 요소가 된다. 여기에 아동이 영업장에서 입은 피해를 영업주가 배상해준 일부 사례에 대한 오해(영업주는 크게 잘못된 것이 없는데 아동의 잘못으로 영업주가 큰 책임을 뒤집어썼다는 것과 같은)까지 겹쳐지면서, 아동은 일부 영업주에게 ‘공포’의 대상이 된 것 같은 결과가 되어 버렸다. 아동을 무균실에 같은 곳에서 키울 것이 아니라면, 영업주들이 내세우는 저런 논리는 아동이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을 같이 만들자는 하소연으로 바꾸어 받아들일 수 있을지언정, ‘노키즈존’을 영업주의 권리로 이해할 이유는 될 수 없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아파트 헬스클럽 동호회가 제정한 아동 회원 가입을 금지하는 회칙(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2020. 4. 7. 자 20진정0072600 결정)과 아파트 단지 내 수영장에서 아동의 자유수영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규정(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2020. 6. 2. 자 20진정 0098100 결정)를 아동에 대한 차별 행위로 보고 시정을 권고한 전례가 있다.

‘노키즈존’을 둘러싼 사람들의 우호적 여론에 깔려 있는 각박한 사회 환경을 지적한 주제발제의 내용에는 일견 수긍할 부분이 있고, 일부 자영업자들이 영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과 이에 적절히 대응할 방안이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현실을 모르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는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고, ‘노키즈존’을 선택하고 갈구하는 이들의 욕망을 그들의 ‘권리’, ‘인권’과 같은 말로 포장해주는 것은 앞으로 철저히 지양해야 한다고 본다. 어느 누구에게도 아동이라는 이유로, 아동을 차별할 수 있는 권리는 없기 때문이다. 대신 우리 모두는 아동에 대한 차별 행위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 필요한 법적, 사회적 규범을 고민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것은 단지 아동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특별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우리와 평등한 동료 시민이기 때문이다.

3. ‘노키즈존’을 금지, 예방하기 위한 입법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노키즈존’ 행위를 권리가 아닌, 헌법과 법령을 위반한 차별행위로 규정하는 이상, 그에 따른 적극적인 규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필자는 ‘노키즈존’ 확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차별행위에 대한 전사회적인 교육과 캠페인, 아동친화적 공간의 확대와 같은 대책이 절실하다는 주제발제의 문제의식에 동의하나, ‘노키즈존’을 법으로 금지한다고 해도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예측에는 다소 동의하기 어렵다.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차별행위에 대해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고,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규제는 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 그동안 국가가 ‘노키즈존’ 과 같은 차별행위를 방치했던 방식이었다.

행정 영역에서 관계자들에게 공익을 위한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 후, 이를 위반한 자들에게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과 같은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과 동시에, 관계자에 대한 각종 안내 및 지원금 제공,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정책적 수단을 병행하여 의무 이행력을 높이는 경우가 있다. 기존의 다른 행정법령 위반 행위와 비교할 때 노키즈존과 같은 영업 행위 금지를 설계하는 것이 다소 낯설고 난해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미리 단정할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이 금지 제도를 다층적으로 구성한다면 어느 정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그렇다면 앞으로 노키즈존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규제 수단을 마련한다고 했을 때 생각해봐야 할 논점은 ① “어떤 법”에 조항을 만들 것인가, ② “금지 의무 조항”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③ 의무 위반에 대한 규제에 어떤 방식을 채택할 것인가, ④ 규제 외에 어떤 정책적 수단을 함께 규정할 것인가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먼저 기존에 발의되어 있는 아동 관련 법령들의 내용과 가능성, 한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입법 대안을 구성해 제시하는 것으로 토론문을 정리하고자 한다.

(1) 현재 발의된 법안들에 대한 검토

(가) 아동기본법안

‘노키즈존’이 아동에 대한 차별행위인 만큼, 그동안 발의되었던 아동 인권에 관한 기본법인 ‘아동기본법안’들을 통해 위 행위를 규제 및 예방할 수 있는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헌법」과 「UN아동권리협약」에 규정된 아동의 인권을 효과적,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아동복지법」 등을 넘은 소위 「아동기본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가 오래 전부터 있었고, 2012년 경기도교육청의 입법청원을 통해 ‘아동청소년인권법안’이 나온 이후로 일부 국회의원 과 시민단체에서 다양한 형태의 ‘아동인권법안’을 제안한 바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위 법안 제정을 아동정책의 주요과제로 명시하였으며, 21대 국회에서는 강훈식 의원과 양금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아동기본법」이 현재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를 기다리는 중이다.

‘노키즈존’과 같은 아동에 대한 차별행위와 관련지어 두 법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강훈식 의원안은 제2조에서 「UN아동권리협약」상 비차별의 원칙을 언급하면서, 제20조에 아동 권리옹호관을 설치해 아동권리 침해상황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시정 등 개선안 권고,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 제언 및 제도 개선 요구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아동권리를 침해당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했다. 양금희 의원안은 제15조에서 아동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국가와 지자체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후, 제24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을 위촉하여 아동권리와 관련한 애로, 건의 사항을 접수, 해소하고 아동권리와 관련된 제도의 발굴 및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제33조에서 강훈식

의원안과 유사한 형태의 아동권리 침해 관련 진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법안 모두 아동의 권리 침해에 대해서 마련하고 있는 구제 수단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진정 절차가 사실상 전부이고, 아동권리옹호관이나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 구체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지 여부가 실무에서 불투명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노키즈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위 법안들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과연 ‘노키즈존’과 같은 유형의 차별행위를 과연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거두기 어렵다.

(나)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 지정 금지 조례

제주도에서 2023. 5. 2.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이 입법예고되었다. ‘노키즈존’에 해당하는 상당수의 영업장이 몰려 있는 제주도에서 발의된 조례만큼 사회적 관심을 많이 받았다.

해당 조례에서는 도지사에게 ‘노키즈존’ 지정을 금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책무를 부과하고(제4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5조). 이에 따라 도지사는 노키즈존 지정 금지를 ‘권고’ 및 ‘계도’ 할 수 있으며, 영업장 내에서 아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제도적 지원, 아동의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보호자 교육, 차별 금지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제6조).

위 조례는 주제발제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그 의미를 폄하할 수 없지만, 제도적 실효성 측면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 ‘금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관철시킬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전무하다. 또한 주제발제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대책 중 하나인 ‘보호자(양육자) 교육’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적절한 수단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앞서 계속 강조했다시피 ‘노키즈존’ 문제는 아동과 양육자들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없고, 관련된 주체들이 모여 ‘아동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하에 적절한 행위 규범과 환경을 만드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양육자 교육이라는 명칭은 여전히 ‘노키즈존’ 문제를 아동과 양육자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처럼 보이게 할뿐더러, 영업주들과 분리된 그들만의 교육은 일면적인 효과만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아동, 보호자(양육자), 영업주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 또는 토의나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하지 않을까.

(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노키즈존’이 아동에 대한 차별이라면, 이는 곧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아동기본법안과 유사하게, 성소수자를 비롯한 각종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행위를 방지하기 위

해, 시민사회에서는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이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에 가깝고, 21대 국회에서는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권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소관위에서 심사 중에 있다.

장혜영 의원안은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재화, 용역, 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명시하고, 제42조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제44조에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제51조에서 차별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자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다.

권인숙 의원안은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장혜영 의원안과 유사하게 차별 행위를 정의한 후, 제22조에서 상업, 공공시설의 소유, 관리자가 성별 등을 이유로 시설물의 사용, 임대, 매매를 제한,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제26조에서 문화, 체육, 오락, 그 밖의 재화 용역의 공급자가 성별 등을 이유로 문화 등의 공급, 이용에서 배제,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었다. 한편 차별행위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구제절차는 제4장 이하에 장혜영 의원안과 거의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제41조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마련해두었다.

앞서 살펴본 아동인권법안과 제주도 조례안과 다르게, 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노키즈존’과 같은 차별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을 통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제도 및 징벌적 손해수단이라는 직간접적 강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의가 있다. 다만 시정권고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와 같은 행정행위를 모두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으로만 두고 있는 것이 과연 이상적인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다. 참고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 차별행위를 판단한 후 행위자에게 권고를 내릴 수 있고, 이러한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러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2, 43, 50조).

물론 ‘노키즈존’의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영역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전문성을 충분히 긍정하지만, 실무에서 여러 업종의 영업장에 대해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과 같은 법령을 근거로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리고 영업장의 실태를 조사, 감독하는 것은 보통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다. 특정 지역에 몰려 있으면서도 전국 단위로 넓게 분포하고 있는 노키즈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잘 할 수 있는 일인 만큼, 향후 이러한 차별행위를 판단하고 규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것이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경기도 인권센터와 같

이 여러 광역자치단체에서 인권 관련 전문기구를 운영하게 된다면 차별행위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이 보다 향상될 것이라 기대한다.

(2) 입법 대안의 제시

‘노키즈존’ 문제에 대한 토론을 준비하면서, 결국 우리가 설계해야 할 것은 ‘노키즈존’만을 막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키즈존’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각종 차별 행위를, 더 나아가 그와 유사한 형태의 다른 차별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행정 정책이라 생각이 들었다. 이에 따라 필자는 ① 아동기본법 등을 통해 국가와 사인의 아동차별 금지 의무를 보다 강력하게 명시하고, ② 동시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통해 ‘노키즈존’과 같은 행위를 ‘차별행위 또는 차별을 예고하는 행위’로 규정해,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제3자의 신청을 받아 차별행위로 판단한 후 행정처분 및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③ 지방자치단체가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은 그 위반행위의 경중과 차수에 따라 경고, 영업정지(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영업허가 취소로 하고, ④ 시정명령의 내용은 ‘노키즈존 영업 및 영업 고지의 철회, 시설의 원상 회복, 아동인권 및 차별금지 교육 수강’ 등으로 구체화하며, 이를 위반하는 업주에 대해서는 위 행정처분과 별개로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설계를 제안한다.

(가) 「아동기본법」 등에서 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 신설 및 강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현재 발의되어 있는 「아동기본법안」에서는 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필자는 여기서 더 나아가 국가와 사인 모두에게 아동에 대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와, 국가에게 아동에 대한 차별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의무를 명시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이 규정이 ‘노키즈존’을 행정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핵심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차별행위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노키즈존’과 같은 차별행위 규제를 「아동기본법안」에 둘 수도 있겠으나, 앞서 언급한 대로 ‘노키즈존’이 다른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행위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동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는 ‘실제로 아동의 출입이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더하여 ‘실제로 아동의 출입이나 이용을 제한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의 간판이나 표시 등을 하여 예고하는 행위’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한 예고 행위 자체가 아동과 보호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차별행위를 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의 신청을 받아 실태를 조사한 후 차별행위로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보다는 다른 행정법 규정을 참고하여 위반 행위의 경중과 차수에 따른 기준을 정해 경고-영업정지-영업허가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판단한다. 이에 더하여 경우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 될 것이다.

(다) 시정조치의 내용 : 노키즈존 영업 중지, 아동인권 및 차별금지 교육 수강 등

‘노키즈존 영업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는 아동의 출입 및 이용을 금지하는 영업 행태를 중지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는 출입이나 이용 제한을 명시한 간판이나 표시의 제거, 영업장 내 일부 공간에 아동의 출입을 금지했을 경우 공간의 원상복귀 등을 상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반행위를 한 영업주를 대상으로 UN아동권리협약과 차별금지에 대한 교육을 일정 시간 수강할 것을 명령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 본다. 이러한 조치명령을 영업주가 신속하게 이행하여 불필요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제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 소위 ‘아동출입금지업소 영업허가제’ 제안에 대한 평가

마지막으로 주제발제에서 언급된 ‘아동출입금지업소 영업허가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다소 명확하지 않으나, 만약 기존의 영업장이나 신규 영업장이 ‘노키즈존’을 운영하려면 아동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붙은 영업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취지라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주제발제에서 예시로 든 단란주점과 같은 경우 현행법상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시설 요건을 갖추면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고, 허가 관청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동법 제37조 제1항, 제2항), 이미 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동조 제3항). 이에 주제발제에서 언급한 허가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동 시행령의 ‘중요한 사항’에 ‘아동의 출입 및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추가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아동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조건을 영업허가에 붙이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주제발제에서는 아동의 출입금지는 아동을 ‘배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조치여야 한다고 밝혔으나, 그것을 국가가 ‘허가’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자칫 사람들에게 ‘국가가 아동을 배제하는 행위를 승인해줄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상당수의 노키즈존이 ‘아동의 안전’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과연 어떤 입장을 노키즈존으로 ‘허가’할지 사전에 명확하게 정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행정법상 영업허가가 영업장 운영에 필요한 물적, 인적 요건을 갖추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아동에게 위협할 것”이라는 요건을 영업허가에 추가로 요구한다는 것이 법체계상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애초에 노키즈존과 같은 영업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는

차별행위인만큼, 구체적인 사례에서 영업주가 아동의 출입 및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특칙을 마련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라 본다.

4. 결어

토론문을 준비하면서 필자는 다른 국가에서도 식당, 여객기 등에서 아동의 출입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다수 있음을 확인했다. 혹자는 그걸 보고 한국의 노키즈존 유행이 유별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오히려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아동에 대한 차별행위가 횡행하고 있다는 우울한 증표로 보인다. 2013년 UN아동권리위원회는 ‘UN아동권리 협약 제31조 휴식, 여가, 놀이, 오락 활동, 문화 예술에 관한 아동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에서 세계 곳곳의 공공장소에 대한 상업화가 심화되면서 아동에 대한 관용이 줄어들고 공동체나 공원, 쇼핑몰 등에 대한 아동의 출입 제한 조치로 인해 아동을 ‘문제거리’로 보는 인식이 형성되고 있음을 우려했고, 이러한 아동에 대한 배제는 아동이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로부터 10년 후 한국 사회는 정확하게 그대로 가고 있는 중이다.

아동 친화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동이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주제발제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아동을 환영하는 공간과 아동을 배제하는 공간이 이분법, 대립적 구도로 공존하는 형태를 우리는 철저히 지양해야 한다. 필자가 노키즈존의 차별행위성을 법리적으로 제시하고, 더 나아가 행정적으로 강력한 규제를 취하자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이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환영한다. 다만 ‘노키즈존’ 과 같은 차별행위에 대하여 기존과 마찬가지로 지도나 계도와 같은 수준에 머무르는 정책만으로는 현실을 유의미하게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해주기를 바란다. 지금 여기 존재하는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해나갈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시급한 과제다.

